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542-10

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542-10

보건복지부
www.mohw.go.kr

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Contents

목차

용어설명 ····· 21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절차 ····· 29

요약 ····· 35

제1장 서론 ····· 49

1. 발간목적 ····· 51
2. 법적근거 ····· 51
3. 자료수집 및 분석 ····· 52
4. 주요 분석항목 ····· 52

보건복지부
www.mohw.go.kr

Contents

제2장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 55

1. 신고접수 ····· 57

가. 전체 신고접수 ····· 57

나. 지역별 신고접수 ····· 60

다. 일반사례 신고접수 ····· 61

2. 신고접수 방법 ····· 62

3. 신고자 ····· 64

가. 전체 신고자 유형 ····· 64

나. 신고의무자 유형 ····· 66

다. 비신고의무자 유형 ····· 68

제3장 장애인학대조사 및 사례판정 ····· 71

1. 학대조사 ····· 73

가. 전체 학대조사 ····· 73

나. 지역별 학대조사 ····· 74

2. 사례판정 ····· 75

가. 전체 사례판정 ····· 75

나. 지역별 사례판정 ····· 76

3. 상담 및 지원 ····· 77
가. 전체 상담 및 지원 ····· 77
나. 지역별 상담 및 지원 ····· 78
4. 사례종결 ····· 79
5. 지역별 상담원 1인당 담당사례 ····· 80

제4장 장애인학대사례 분석 결과 ····· 83

1. 인구사회학적 요인 ····· 85
가. 피해장애인 ····· 85
1) 피해장애인 성별 ····· 85
2) 피해장애인 연령 ····· 86
3)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 87
4)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 91
5)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 91
나. 학대행위자 ····· 92
1)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 ····· 92
2)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 94
3)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동거여부 ····· 95

보건복지부
www.mohw.go.kr

Contents

2.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 **96**

3. 장애인학대 유형 ····· **98**

가. 장애인학대 유형 ····· 98

1) 장애인학대 유형 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 98

2) 장애인학대 유형 Ⅱ(중복 학대 미분류) ····· 100

나. 장애인학대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 101

1)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 101

2)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 102

3) 장애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 103

4)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 104

5) 장애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 104

다.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 106

4.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 **107**

가. 응급조치 ····· 107

나. 피해장애인 지원 ····· 108

다. 지역별 상담 및 지원 ····· 110

라. 사례종결 ····· 111

마. 사후 모니터링 ····· 111

제5장 특성별 장애인학대사례 분석 결과 ····· 113

1.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 115

가. 지역별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 116

나.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자 유형 ····· 117

다.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 118

1)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및 연령 ····· 118

2)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거주유형 ····· 119

3)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 119

라.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 120

1)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성별 ····· 120

2)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 120

마.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장소 ····· 122

바.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 123

1)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123

2)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 124

보건복지부
www.mohw.go.kr

Contents

사. 발달장애인 학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 125
1)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 125
2)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연령 ····· 125
3)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 126
아. 발달장애인 학대 조치 ····· 128
1) 발달장애인 학대 응급조치 ····· 128
2) 발달장애인 학대 사법지원 ····· 128
2.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례 ····· 129
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 129
1) 전체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 129
2) 지역별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 130
나.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의 피해장애인 ····· 132
1)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 132
2)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 133
3)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 134
다.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신고자 유형 ····· 135

라.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 136
1)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136
2)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 138
마.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조치 ····· 140
1)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응급조치 ····· 140
2)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피해장애인 사법지원 ····· 140
3.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사례 ····· 141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신고 ····· 141
1)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사례판정 ····· 141
2)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정 ····· 142
나.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 143
다.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장애인학대 유형 ····· 144
1)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장애인학대 유형(중복 학대 미분류) ····· 144
2)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장애인학대 유형(중복 학대 미분류) ····· 144

보건복지부
www.mohw.go.kr

Contents

제6장 정책 제언 ····· 147

부록 ····· 155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개 및 현황 ····· 157

표 목차

[표 1-1] 주요 분석항목 ····· 53
[표 2-1] 전체 신고접수 건수 ····· 58
[표 2-2] 월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 58
[표 2-3] 지역별 신고접수 건수 ····· 60
[표 2-4] 일반사례 신고접수 건수 ····· 61
[표 2-5] 전체 신고접수 방법 ····· 62
[표 2-6] 지역별 신고접수 방법 ····· 63
[표 2-7] 전체 신고자 유형 ····· 66
[표 2-8]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건수 ····· 67
[표 2-9]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건수 ····· 68
[표 3-1] 학대조사 ····· 73
[표 3-2] 지역별 학대조사 건수 ····· 74
[표 3-3] 전체 사례판정 ····· 75
[표 3-4] 지역별 사례판정 ····· 76
[표 3-5] 학대의심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 77
[표 3-6] 지역별 상담 및 지원 ····· 78
[표 3-7] 사례종결 ····· 79
[표 3-8] 지역별 상담원 1인당 담당사례 ····· 80

Contents

[표 4-1] 피해장애인 성별 ····· 85
[표 4-2] 피해장애인 연령 ····· 86
[표 4-3] 장애인 등록여부 ····· 87
[표 4-4] 피해장애인 주장애유형 ····· 88
[표 4-5] 피해장애인 장애정도 ····· 90
[표 4-6]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 91
[표 4-7]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 91
[표 4-8]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 ····· 92
[표 4-9]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 95
[표 4-10]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동거여부 ····· 95
[표 4-11]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 97
[표 4-12]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99
[표 4-13]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 100
[표 4-14]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 101
[표 4-15]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 102
[표 4-16] 장애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 103
[표 4-17]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 104
[표 4-18] 장애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 ····· 105
[표 4-19]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 106
[표 4-20] 응급조치 ····· 107

[표 4-21]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 109
[표 4-22] 피해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건수 ····· 109
[표 4-23] 지역별 상담 및 지원 ····· 110
[표 4-24] 사례종결 ····· 111
[표 4-25] 사후 모니터링 ····· 111
[표 5-1] 지역별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 116
[표 5-2]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자 유형 ····· 117
[표 5-3]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및 연령 ····· 118
[표 5-4]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거주유형 ····· 119
[표 5-5]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 119
[표 5-6]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성별 ····· 120
[표 5-7]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 121
[표 5-8]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장소 ····· 122
[표 5-9]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123
[표 5-10]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 124
[표 5-11]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 125
[표 5-12]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연령 ····· 125
[표 5-13]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 127
[표 5-14] 발달장애인 학대 응급조치 ····· 128
[표 5-15] 발달장애인 학대 사법지원 유형 건수 ····· 128

보건복지부
www.mohw.go.kr

Contents

[표 5-16] 전체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 129
[표 5-17] 지역별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 131
[표 5-18]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 132
[표 5-19]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 133
[표 5-20]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 134
[표 5-21]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피해장애인 장애정도 ····· 134
[표 5-22]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신고자 유형 ····· 135
[표 5-23]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136
[표 5-24]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 138
[표 5-25]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응급조치 ····· 140
[표 5-26]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사법지원 ····· 140
[표 5-27]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사례판정 ····· 141
[표 5-28]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정 ····· 142
[표 5-29]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 143
[표 5-30]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장애인학대 유형(중복 학대 미분류) ····· 144
[표 5-31]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장애인학대 유형 ····· 145

그림 목차

[그림 2–1] 전체 신고접수 건수 ····· 58
[그림 2–2] 월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 59
[그림 2–3] 지역별 신고접수 건수 ····· 61
[그림 2–4] 전체 신고자 유형 ····· 66
[그림 2–5]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건수 ····· 67
[그림 2–6]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건수 ····· 69
[그림 3–1] 전체 사례판정 ····· 75
[그림 3–2] 지역별 사례판정 ····· 77
[그림 3–3] 지역별 상담 및 지원 ····· 79
[그림 4–1] 피해장애인 성별 ····· 85
[그림 4–2] 피해장애인 연령 ····· 86
[그림 4–3] 장애인 등록여부 ····· 87
[그림 4–4] 피해장애인 주장애유형 ····· 89
[그림 4–5] 피해장애인 장애정도 ····· 90
[그림 4–6]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 91
[그림 4–7]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 ····· 93
[그림 4–8]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대분류) ····· 94
[그림 4–9]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 97

보건복지부
www.mohw.go.kr

Contents

[그림 4-10]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99
[그림 4-11]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 100
[그림 4-12]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 101
[그림 4-13]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 102
[그림 4-14] 응급조치 ····· 107
[그림 5-1]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및 연령 ····· 118
[그림 5-2]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성별 ····· 120
[그림 5-3]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대분류) ····· 122
[그림 5-4]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123
[그림 5-5]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 124
[그림 5-6] 전체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 130
[그림 5-7]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137
[그림 5-8]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 139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용어설명

용어설명

기본개념

- 장애인: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를 말함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 장애유형: 장애유형은 15가지로 구분됨
  -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
  -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구분		장애유형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 · 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정신장애

-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그리고 그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장애정도: 장애인을 1~6급으로 나누던 장애등급제가 폐지(장애인복지법 개정, 2019.7.1.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이라는 용어를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 등의 역

할을 수행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피해자 지원 등의 장애인학대 대응 업무와 예방업무를 수행

▶ 장애인학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언어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

–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유형력)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 정서적 학대: 언어적인 방법(폭언, 협박, 비하 등)이나 비언어적인 방법(무시, 비웃음 등) 등 다양한 형태로 장애를 가진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심한 수치심이나 모욕감,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성적 학대: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 성폭행, 성매매 등 성적 착취,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

– 경제적 착취: 장애인의 금전, 가치 있는 물건 등 재산을 힘으로 빼앗거나 장애인을 속여서 스스로 내어놓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행위

– 유기 · 방임: 유기는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후견인 등)이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방임은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보호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 중복 학대: 하나의 학대사건에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 방임의 여러 학대유형이 동반되는 경우를 말함

▶ 피해장애인: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인

▶ 학대행위자: 장애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으로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및 제2조 제1호)

▶ 집단이용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이나 재활시설과 같은 정신건강증진시설,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교육기관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곳을 말하며 미신고시설도 실제 다수가 이용할 경우 집단이용시설로 봄

신고접수

- 신고접수: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
-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신고내용에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언어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행위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례
- 일반사례: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사례가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차별 관련 사례, 복지 및 일반 법률상담이나 기관문의 등 정보제공이 필요한 사례, 불만이나 하소연을 토로하여 위로나 인정 등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사례, 장애인학대와 무관한 개인 간의 다툼이나 분쟁과 관련된 사례
- 신고접수 방법
  - 내방신고: 신고자 또는 피해장애인 등이 직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접수 방법
  - 인지신고: 언론, 외부회의, 출장 등을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이 장애인학대 사건을 알게 되는 경우의 접수 방법
- 신고의무자: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함.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 비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

학대조사 및 사례판정

- 학대조사: 신고접수 된 장애인학대 의심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모든 형태의 조사
- 응급조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학대 현장에 출동했을 때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안전한 곳에서 일시 보호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이송하여 검사, 치료를 받게 하는 조치(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 사례판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장애인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비학대사례로 판정하고 있음
- 사례회의: 신고접수 된 장애인학대 의심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사례를 내부적으로 공유 · 논의하고 사례지원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결정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내부회의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장애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하여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외부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하여 결정하는 위원회(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제2항 제4호).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에는 장애인 당사자, 관계공무원, 장애인 복지 및 법률 · 의료 · 인권활동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장애인학대 해당

여부, 학대행위자나 가족 등 관련자들의 의견 청취,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함. 위원회의 명단과 발언 등 회의내용은 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비공개로 함

- 학대사례: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사례
- 잠재위험사례: 학대가 의심되지만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사례, 현재는 학대로 판정하기 어려우나 향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있어 예방을 위한 사후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
- 비학대사례: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학대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사례로, 허위신고나 장애와 무관한 다툼 등이 이에 해당함
- 학대발생장소: 학대사례에서 장애인학대가 발생한 장소

피해자 등 지원

- 피해장애인 지원: 사례 판정 이후 학대로 인한 후유증의 감소, 학대의 재발 방지, 피해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으로 의료지원, 심리지원,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기타지원으로 나뉨
- 상담 및 지원: 신고접수 이후부터 사례종결 전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이 실시하는 피해장애인이나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구체적인 피해장애인 지원 활동을 통칭
- 사례종결: 피해자 등 지원 절차를 끝내는 것을 의미하며 필요한 지원이 완료되었거나, 지원이 불가능 또는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 경우, 타 기관에서 이미 피해자 지원이 실시되어 지원이 불필요한 경우, 타 지역기관으로 사례가 이관된 경우 사례를 종결함
- 사후 모니터링: 사례종결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장애인의 안전과 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관리 업무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절차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절차

▶ 사례지원 개요

사례지원이란 장애인학대 의심사례의 접수, 장애인학대 조사, 응급조치, 피해자 등에 대한 회복지원, 사후모니터링 등 장애인학대사례에 대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개입절차 전반을 말한다.

사례지원의 대상에는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과 가족, 보호자, 학대행위자가 포함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3에 따라 피해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례지원의 대상이 된다.

사례지원은 피해장애인의 입장에서 피해장애인의 권리와 이익에 부합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피해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안내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피해장애인의 의사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족이나 보호자의 의사나 욕구를 우선시할 수 없다. 사례지원은 장애인학대 사례에 대한 대응을 넘어서 장애인학대를 예방하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옹호활동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사건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선입견과 편견을 배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례지원 과정에서 피해장애인,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과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 절차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접수 → 조사 → 사례판정 → 피해자 등 지원 → 사례종결 → 사후 모니터링'의 절차로 진행된다.

누구나 장애인학대를 알게되면 장애인학대 신고전화(1644-8295)를 이용하여 장애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전국 17개(2018.12.31.기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신고를 접수받으며, 신고자의 위치로부터 가까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전화가 연결 된다. 근무시간 이외 야간이나 휴일에는 112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전화 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한 온라인 신고, 직접 기관을 찾아오는 방문 신고, 문자메시지, 서신 등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접수를 받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은 신고 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학대조사를 실시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대조사 시 피해장애인 및 학대행위자 등 관련자를 면담하는데 이때 조사나 질문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할 수 있으며 피해장애인 및 관련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할 수 있다. 장애인학대와 관련되어 있는 자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은 학대조사 시 피해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안전한 곳으로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쉼터 등에서 보호할 수 있다. 응급조치 시 성인인 피해장애인의 의사가 확인된 경우 학대행위자는 물론 가족이나 보호자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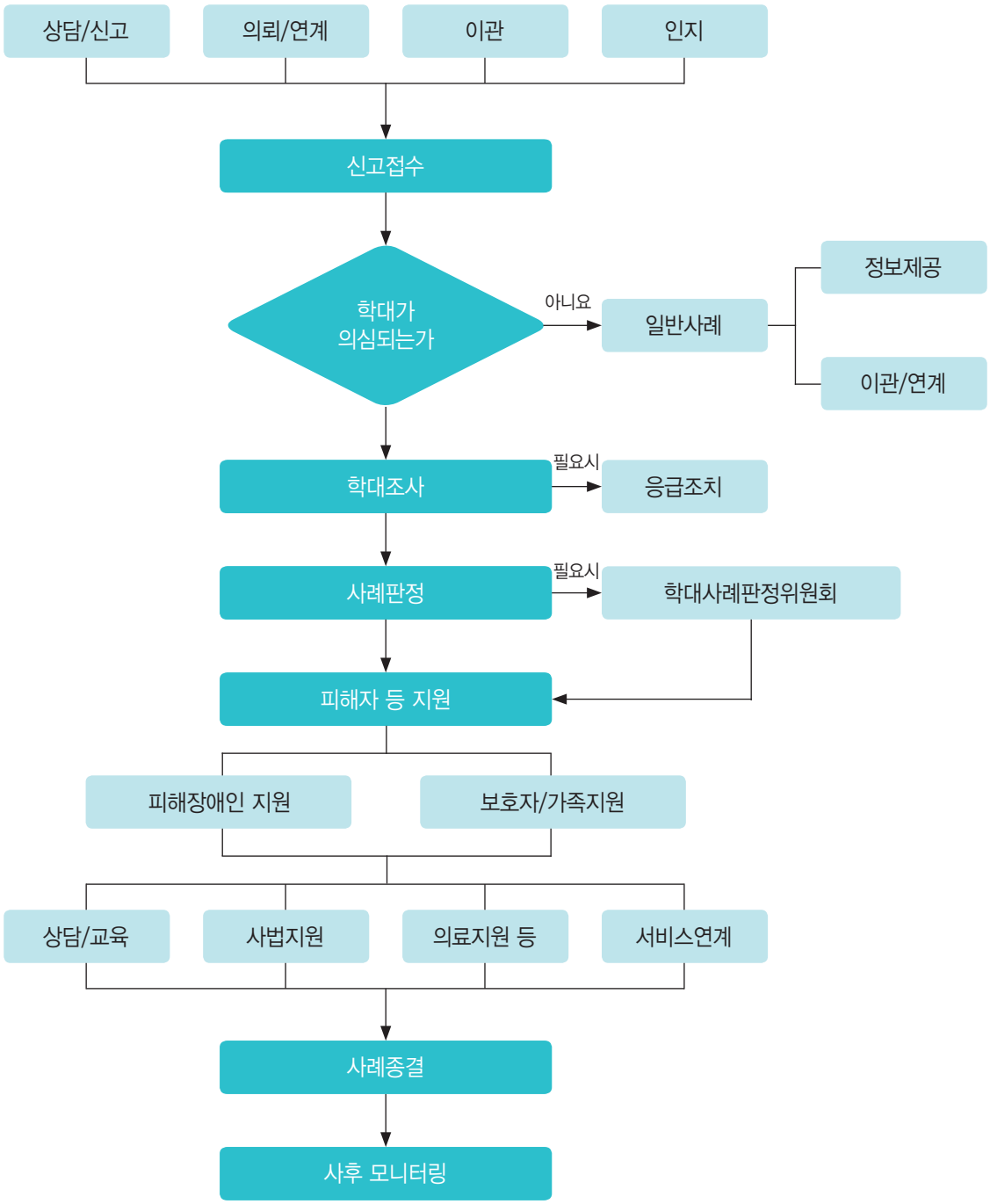
학대조사 이후 해당사례가 학대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내부절차인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학대여부를 판정한다. 사례회의에서 판정이 어려운 경우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학대여부를 판정할 수 있으며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 회의 결과를 따른다.

장애인학대사례로 판정되면 피해장애인과 충분한 상담을 실시하여 피해사실의 확인, 지원과정, 내용,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피해자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학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의료지원, 심리지원,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기타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이 마무리되면 사례회의를 통해 필요한 지원이 완료되었는지 평가하고 사례종결 여부를 결정한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지원 계획을 수정하고 그 계획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실시한다.

사례를 종결하기로 결정되면 사례종결 이후 일정기간 동안 피해장애인의 재학대 발생 여부나 안정적인 생활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모니터링의 방법, 기간 등 모니터링의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획대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료한다.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체계도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요약

요약

❖ 본 보고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3,658건의 사례를 지원 절차에 따라 분석했으며, 향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업방향과 장애인학대 대응 ·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 본 보고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학대조사 및 사례판정, 피해장애인, 학대행위자, 장애인학대 유형,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사례 현황을 분석함

❖ 일부 항목의 경우 각 유형별 현황의 숫자가 많지 않아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항목 간 비교를 통해 많고 적음을 통한 의미 부여보다 추이 파악의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을 당부함

❖ 본 보고서는 대상이나 절차, 방법 등의 적합성 및 타당성, 오차의 발생여부 등을 확인 · 점검하기 위한 시범적인 보고서로,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통계가 아님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신고접수

-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17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총 3,658건이었음
  - 학대의심사례 1,835건(50.2%), 일반사례 1,823건(49.8%)
  - 전체 신고 기준, 월 평균 신고접수는 304건이며 4월에 385건, 7월 368건, 3월 347건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학대의심사례는 월 평균 153건 접수되었으며 4월에 229건, 7월 193건 순으로 접수건수가 많았음
  - 일반사례는 8월 197건, 7월 175건 순으로 접수됨
- 지역별 신고접수 건수는 서울 901건(24.6%)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95건(10.8%), 부산 304건(8.3%) 순이었음
  - 학대의심사례는 경기 293건(16.0%)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71건(9.3%), 충남 157건(8.6%)으로 그 뒤를 이음
- 2018년 일반사례는 1,823건 접수되었으며 그 중 정보제공이 1,219건(66.9%)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지지 267건(14.6%), 기타 176건(9.7%), 차별 161건(8.8%)이었음

신고접수 방법

- 2018년 접수된 신고 3,658건 중 전화로 접수된 신고는 2,747건(75.1%)이었으며, 인지신고 261건(7.1%), 내방신고 231건(6.3%) 순으로 나타남

신고자

- 학대의심사례 1,835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802건(43.7%),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033건(56.3%)으로 나타남
  -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802건 중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의한 신고가 421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253건(31.5%)으로 많았음
  -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1,033건 중 기관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408건(39.5%)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신고가 248건(24.0%),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건수는 194건(18.8%)이었음

장애인학대조사 및 사례판정

학대조사

- 2018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1,835건에 대해 총 1,479건의 학대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실시율은 80.6%로 나타남
  - 접수된 모든 사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이미 타 기관에서 조사가 완료된 경우, 피해장애인의 소재 불명, 피해장애인 본인의 명시적 개입 거부 등의 사유로 학대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지역별 학대조사 실시율은 제주가 100%로 모든 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충남이 98.7%, 전북이 96.2% 순으로 나타남

사례판정

- 2018년 학대의심사례 1,835건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889건(48.4%)이며 비학대사례 796건(43.4%), 잠재위험사례 150건(8.2%)임
-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지역별 학대 판정 비율은 평균 48.4%로 학대의심사례 10건 중 약 5건을 학대사례로 판정함

상담 및 지원

- 2018년 학대의심사례 1,835건에 대해 17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수행한 상담 및 지원은 총 15,885회로 나타났으며 사례 1건당 평균 8.7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함
  - 학대의심사례 1건당 가장 많은 상담 및 지원이 이뤄진 지역은 전남으로, 사례 1건당 평균 17.6회를 실시했으며 광주가 15.0회, 울산이 12.7회 순으로 나타남

사례종결

- 2018년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1,835건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 총 1,279건의 사례가 종결, 당해연도 사례종결율은 69.7%로 나타남

지역별 상담원 1인당 담당사례

- 2018년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1,835건에 대해 17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 40명이 사례에 개입했으며 상담원 1인당 평균 45.9건의 사례를 담당, 평균 397.1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함

장애인학대사례 분석 결과

피해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889건의 피해장애인 성별을 보면 남성 488건(54.9%), 여성 401건(45.1%)으로 남성이 9.8%p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피해장애인의 연령은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20대(20~29세)가 211건(23.7%)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65건(18.6%), 40대 151건(17.0%)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889건 중 828건(93.1%)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었으며, 61건(6.9%)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았음
  - 889건의 피해장애인 장애유형을 분석하면 지적장애가 587건으로 전체 장애인학대 유형 중 66.0%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지체장애 61건(6.9%), 정신장애 50건(5.6%)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으로 등록된 828건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790건(95.4%),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37건(4.5%)이었음
-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889건 중 피해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곳에 사는 경우(재가)는 644건(72.4%),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는 245건(27.6%)으로 나타남
- 피해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를 살펴보면 기초수급에 해당하는 사례가 460건(51.7%), 비수급에 해당하는 사례가 404건(45.4%), 차상위에 해당하는 사례가 25건(2.8%)이었음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 학대행위자는 한 사건에서 다수일 수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주행위자 1명에 대한 정보만을 기초로 분석하였기에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수가 동일함
-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889건의 학대행위자 성별을 보면 남성이 573건(64.5%), 여성이 310건(34.9%), 파악안됨 6건(0.7%)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는 60대가 233건(26.2%)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230건(25.9%), 40대 143건(16.1%) 순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를 보면 학대판정사례 889건 중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39.3%(349건)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으로 가족 및 친인척 30.5%(271건), 타인 29.7%(264건) 순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가 기관종사자인 경우 그 중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23.1%(205건),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8.3%(74건) 순으로 높았음
  - 학대행위자가 가족 및 친인척인 경우 그 중 부모가 12.9%(115건),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가 6.0%(53건) 순으로 높았음

– 학대행위자가 타인인 경우 그 중 지인이 10.5%(93건), 고용주 6.5%(58건) 순으로 높았음

▶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889건 중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이 따로 사는 경우가 647건(72.8%), 함께 사는 경우가 237건(26.7%),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가 5건(0.6%)으로 나타남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 장애인학대의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의 거주지, 학대행위자의 거주지, 직장 및 일터, 교육기관, 의료기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이용시설,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 종교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2018년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889건 중 피해장애인의 거주지에서 발생한 경우가 35.0%(311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거주시설이 21.9%(195건), 직장 및 일터가 12.3%(109건) 순으로 나타남

장애인학대 유형

▶ 장애인학대 유형을 분석한 결과 중복 학대가 29.6%(263건)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착취 20.9%(186건), 신체적 학대 18.7%(166건), 방임 14.6%(130건), 정서적 학대 7.9%(70건), 성적 학대 7.8%(69건), 유기 0.6%(5건) 순으로 나타남

▶ 중복 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장애인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가 27.5%(339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 착취 24.5%(302건), 방임 18.6%(229건), 정서적 학대 17.9%(221건), 성적 학대 9.0%(111건), 유기 2.6%(32건)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의 성별을 보면 경제적 착취와 방임에서 각각 30.4%p, 27.6%p로 남성의 비율이 높았음. 정서적 학대와 성적 학대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특히 성적 학대의 경우 여성이 64.0%p로 높은 차이를 보임

▶ 장애인학대 유형에 따른 피해장애인의 연령대를 보면 20대부터 50대까지 넓은 분포로 퍼져있음

– 신체적 학대는 20대 다음으로 1~19세 이하, 30대 순이었으며 정서적 학대도 비슷한 경향을 보임

– 성적 학대는 20대 다음으로 30대, 1~19세 이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경제적 착취는 다른 유형과 다르게 50대가 가장 높았고, 40대, 20대의 순이었음

– 유기는 40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방임은 20대부터 40대까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남

▶ 장애인학대 유형 1,234건에서 피해자의 장애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1,135건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은 신체적 학대가 37.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가 27.1%로 나타남

– 뇌병변장애인은 신체적 학대가 31.7%, 방임이 23.3% 순으로 나타났고, 청각장애인은 경제적 착취가 41.7%로 가장 높았음

– 지적장애인은 경제적 착취가 25.5%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 학대가 24.5%로 그 뒤를 이음

– 자폐성장애인은 신체적 학대가 67.9%로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장애인은 경제적 착취가 30.7%로 나타났음

- 장애인학대 유형에 따른 피해장애인의 거주유형을 보면 방임을 제외한 모든 학대유형에서 피해자가 재가에서 생활하는 사례가 시설 거주 사례보다 높게 나타났음. 반면 방임의 경우 시설이 56.3%, 재가가 43.7%로 피해자가 시설에서 거주하는 사례가 더 높게 나타남
- 장애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를 보면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가장 높았으며, 가족 및 친인척, 타인, 파악안됨 순으로 나타남
  – 신체적 학대의 행위자는 부모인 경우가 2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17.7%로 그 뒤를 이음
  – 정서적 학대의 행위자는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인 경우가 17.2%, 부모인 경우가 16.3%로 나타남
  – 성적 학대의 행위자는 지인이 22.5%,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인 경우가 15.3%로 나타남
  – 경제적 착취의 행위자는 타인에 해당하는 고용주인 경우가 16.6%,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14.9%로 나타남
  – 유기의 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인 경우가, 방임의 행위자는 기관종사자인 경우가 높게 나타남
- 피해장애인의 거주지에서는 신체적 학대(33.3%), 경제적 착취(24.8%)가 주로 발생했으며, 학대행위자의 거주지에서는 경제적 착취(32.7%), 신체적 학대(28.6%)의 비율이 높았음
- 직장 및 일터에서는 경제적 착취(44.5%)와 정서적 학대(27.7%) 비율이 높았으며 교육기관에서는 신체적 학대(54.5%), 정서적 학대(36.4%)가 높게 나타남
-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방임(46.5%), 신체적 학대(21.5%)의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장애인이용시설에서는 방임(34.7%), 정서적 학대(28.0%) 순으로 나타남.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에서는 경제적 착취(33.9%)와 정서적 학대(22.6%)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 2018년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889건 중 107건에 대해 피해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응급조치를 실시함
  – 응급조치한 장소는 쉼터가 54건, 거주시설이 19건, 의료기관이 18건, 기타장소가 16건이었음
- 2018년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889건 중 피해자 지원을 실시한 사례는 759건으로 총 1,201건의 피해자 지원이 이뤄짐
  – 중재나 교육연계와 같은 기타지원이 42.5%로 가장 많이 이뤄졌으며 행위자 처벌과 관련된 사법지원 23.5%, 복지서비스 연계와 같은 복지지원 10.2%, 피해장애인의 거주공간 마련과 관련된 거주지원 10.0%, 병원 치료 등과 관련된 의료지원이 4.8%이었음
  – 피해장애인에게 지원된 사법지원을 세부적으로 보면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이 42.4%로 가장 많이 이뤄졌음. 고발 및 수사의뢰가 40.0%, 소송구조가 7.4%, 후견인 선임이 5.5%, 기타 4.8% 순으로 이뤄짐

- 학대판정사례 889건에 대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총 11,083회의 상담 및 지원이 실시되었고, 장애인학대사례 1건당 평균 12.5회 상담 및 지원이 이뤄짐
  -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례 1건당 전남이 평균 24.2회, 광주가 평균 20.1회로 가장 많은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함
- 2018년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889건 중 12월 31일까지 종결한 사례는 546건으로 당해연도 사례종결율은 61.4%임. 2018년 학대로 판정한 사례 10건 중 4건은 2019년에도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함
- 2018년 종결된 학대사례 546건 중 피해장애인의 안전과 학대재발여부를 확인하는 사후모니터링이 실시된 경우는 249건이며, 사후 모니터링 실시율은 45.6%로 나타남. 모니터링을 실시한 249건에 대해 총 820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사례 1건당 약 3.2회 모니터링이 이뤄짐

특성별 장애인학대사례 분석 결과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 발달장애인 학대는 2018년 전체 장애인학대의 70.4%(626건)를 차지하여 발달장애인은 학대 고위험군임이 드러남
  - 본 장에서는 학대피해 장애인의 주장애 또는 부장애가 발달장애인인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기에 전체 학대사례의 발달장애인 수치 68.5%(609건)와 차이가 있음
  -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북이 121건(19.3%)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66건(10.5%), 경기 56건(8.9%), 경남 47건(7.5%) 순으로 나타남
- 발달장애인 학대 626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44.9%(281건)이었으며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55.1%(345건)로 나타남
  -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의한 신고가 19.8%(124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7.9%(112건)로 다른 직군에 비해 높은 신고율을 보임
  - 비신고의무자 중 기관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35.3%(221건)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 및 친인척 9.9%(62건), 타인 7.0%(44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대피해자인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신고한 경우는 5.2%(18건)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임
-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341건(54.5%), 여성이 285건(45.5%)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9.0%p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186명(29.7%)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21명(19.3%), 40대 109명(17.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를 보면 기초생활수급대상 발달장애인은 전체의 54.6%(342건)이었으며, 차상위수급자는 3.0%(19건), 비수급자는 42.3%(265건)로 나타남

-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의 거주유형 중 재가가 69.3%(434건), 다수가 집단으로 거주하는 시설이 30.7%(192건)로 나타남
- 발달장애인 학대의 학대행위자 성별은 남성이 414건(67.5%), 여성이 209건(32.5%)으로 남성 학대행위자가 여성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남
- 발달장애인 학대에서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를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28.1%(176건)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 13.6%(85건),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10.2%(64건), 지인 8.8%(55건), 고용주 6.1%(3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발달장애인 학대 10건 중 4건 이상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및 교육기관 종사자에 의해 발생함
- 발달장애인 학대가 주로 발생하는 장소는 피해장애인의 거주지가 32.7%(205건)로 나타났으며 장애인거주시설 26.8%(168건), 직장 및 일터 11.7%(73건), 학대행위자의 거주지 8.1%(51건) 순으로 나타남
- 발달장애인 학대유형을 분석한 결과 중복 학대가 27.3%(171건)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착취 20.9%(131건), 신체적 학대 17.6%(110건), 방임 17.6%(110건), 성적 학대 9.3%(58건), 유기 0.5%(3건) 순으로 나타남
- 중복 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발달장애인 학대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가 25.5%(218건)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착취 24.6%(210건), 방임 20.7%(177건), 정서적 학대 16.5%(141건), 성적 학대 10.5%(90건), 유기 2.1%(18건) 순으로 나타남
- 발달장애인 학대유형과 피해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교차분석하면 성적 학대를 제외하고 모든 학대 유형에서 남성 발달장애인이 여성 발달장애인보다 높게 나타남. 성적 학대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약 4.6배 높게 나타났음
- 피해발달장애인 중 20대가 대부분의 학대유형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적 착취는 40대에 그 피해가 집중됨
- 발달장애인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의 관계에서 보면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44.4%(379건)로 가장 많았고, 가족 및 친인척 30.0%(256건), 타인 25.2%(215건), 기타 0.5%(4건) 순으로 나타남
  - 신체적 학대는 부모에 의한 학대가 25.2%,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22.5%로 뒤를 이음
  - 정서적 학대는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23.4%, 부모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각각 16.3%로 나타남
  - 성적 학대는 지인에 의한 학대가 16.7%, 이웃과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각각 15.6% 순으로 나타남
  - 경제적 착취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에 의한 경우가 17.6%, 고용주에 의한 경우가 15.7% 순으로 나타남
  - 유기의 경우 부모가 행위자인 경우가 38.9%로 가장 많았음
  - 방임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에 의한 경우가 58.2%로 가장 많았음
- 발달장애인 학대 626건 중 응급조치는 12.6%(79건) 실시함

– 그 중 쉼터가 51.9%로 가장 많이 이용했고, 장애인거주시설 20.3%, 기타 19.0%, 의료기관 8.9% 순으로 실시

▶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에게 실시한 사법지원은 총 301건으로 그 중 고발 및 수사의뢰가 42.9%로 가장 높았고,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42.2%, 후견인 선임 7.3% 순으로 나타남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례

▶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시설, 교육기관 등 다수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집단이용시설이라 하는데 이곳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는 전체 학대의 35.2%(313건)를 차지했음

– 장애인거주시설이 62.3%(195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이용시설 16.0%(50건), 교육기관 12.1%(38건),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 9.6%(30건) 순으로 나타남

▶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지역별로 볼 때 경북이 26.2%(82건)로 가장 많았고, 전북 20.1%(63건), 경기 10.5%(33건) 순이었음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경북이 가장 많았고, 장애인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전북,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은 제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집단이용시설 학대의 피해장애인 성별 중 남성이 63.3%(198건), 여성이 36.7%(115건)로 나타남. 남성이 여성보다 약 1.7배 높았음

–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학대의 피해장애인의 성별에서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약 5.3배 높게 나타남

▶ 집단이용시설 학대의 피해장애인 연령은 20대가 27.8%(87건)로 가장 많았고, 30대 19.5%(61건), 19세 이하 18.2%(57건), 40대 15.7%(49건) 순으로 나타남

–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학대는 학령기인 1~19세 이하의 피해장애인이 많았음
–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20대, 30대, 40대의 순으로 피해장애인이 많았음
– 장애인이용시설은 20대 다음으로 30대, 1~19세 이하 순으로 피해장애인이 많았음
–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경우 20대의 피해장애인이 가장 많았음

▶ 집단이용시설의 피해장애인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72.2%(226건)로 가장 많았고 뇌병변장애 8.0%(25건), 정신장애 4.5%(14건) 순으로 나타남. 모든 집단이용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의 피해사례가 가장 많았음

–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97.7%(293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2.3%(7건)임. 중증의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됨

▶ 집단이용시설의 학대에서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37.1%(116건),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62.9%(197건)로 전체적으로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신고의무자보다 약 1.7배 높았음

–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학대는 비신고의무자인 가족 및 친인척의 신고비율이 높았음
–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비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신고의무자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신고 비율이 높았음

– 장애인이용시설의 경우 신고의무자자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신고비율이 높았음
–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비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많았음

▶ 집단이용시설의 장애인학대 유형을 보면 중복 학대가 33.2%(104건), 방임 32.3%(101건), 신체적 학대 20.4%(64건), 경제적 착취 5.4%(17건), 정서적 학대 5.1%(16건), 성적 학대 3.5%(11건)임
– 전체 장애인학대 유형의 경향인 중복 학대▶경제적 착취▶신체적 학대▶방임▶정서적 학대▶성적 학대▶유기와는 다름
–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학대는 중복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높았음
–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방임, 중복 학대가 높았음
– 장애인이용시설은 중복 학대와 신체적 학대, 방임의 순으로 나타남
–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은 중복 학대, 경제적 착취가 높았음

▶ 집단이용이설에서 발생한 학대 313건 중 피해장애인이 경험한 학대를 유형별로 보면 448건으로 방임이 34.6%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학대 25.7%, 정서적 학대 18.1%, 경제적 착취 13.6%, 성적 학대 6.3%, 유기 1.8% 순임
–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학대는 전체 유형대비 신체적 학대가 54.5%로 가장 높음
–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전체 유형대비 방임 46.5%, 신체적 학대 21.5% 순임
– 장애인이용시설은 전체 유형대비 방임 34.7%, 정서적 학대 28.0% 순임
–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은 경제적 착취가 33.9%로 가장 많았음

▶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313건 중 응급조치를 한 경우는 8.0%(25건)임. 이 중 쉼터가 10건, 장애인거주시설 6건, 의료기관 5건으로 나타남

▶ 집단이용시설 학대에서 피해자에게 가장 많이 실시한 사법지원 유형은 고발 및 수사의뢰로 전체의 51.3%를 차지,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은 44.9%로 나타남
– 전체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사법지원 세부유형에 비해 고발 및 수사의뢰 비율이 11.3% 높게 나타남. 집단이용시설 학대는 주로 고발 및 수사의뢰,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사례

▶ 2018년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1,835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43.7%(802건),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56.3%(1,033건)임

▶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정 결과를 보면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례 802건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45.0%(361건)이었음.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례 1,033건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51.1%(528건)로 나타남

▶ 신고의무자 직군 중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가장 많은 신고를 했으며, 신고사례 중 학대 판정 비율은 34.9%로 나타남. 다음으로 많은 신고를 한 직군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신고사례 중 학대 판정 비율은 58.5%이었음

▶ 신고의무자는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를, 비신고의무자는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를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발견하고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신고의무자는 학대행위자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일 때 신고를 가장 많이 하였고, 다음으로 부모,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지인 순이었음
- 비신고의무자도 마찬가지로 학대행위자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일 때 신고를 가장 많이 하였고, 다음으로 부모, 지인 순이었음



보건복지부
www.mohw.go.kr

1

서론

1. 발간목적
2. 법적근거
3. 자료수집 및 분석
4. 주요 분석항목

제1장

서론

1. 발간목적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사건의 지속적 증가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 지원 기관의 부재를 인식하고 장애인학대 사건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마련하였다. 2010년부터 2016년 말까지 시범사업으로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개소를 운영하였다. 이후 장애계와 국회의 노력으로 2015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규정이 마련되었고 2017년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전국적으로 설치되었다.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장애인차별에 관한 통계가 매년 발표되는 것과 달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전까지 국가 차원의 장애인학대 통계가 생산되거나 발표된 적이 없었다.

본 보고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접수한 장애인학대 사례를 분석한 자료로 우리나라의 장애인학대 현황을 보여주는 최초의 자료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번 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현장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들이 마련될 것이다.

2.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의거하여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17개가 운영 중이다.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피해자 지원, 사후관리 등 장애인학대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업무를 하고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관련 연구, 프로그램 개발, 인력개발, 장애인학대 통계 생산 등 지역기관에 대한 지원 및 정책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를 토대로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한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이번 분석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17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신고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모든 항목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 항목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통계는 백분율의 경우 반올림되어 각 항목의 합계가 100.0%에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주요 분석항목

본 보고서에서 주요하게 분석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1–1] 주요 분석항목

분류	내용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 신고접수 – 전체, 지역별, 일반사례 신고접수 • 신고접수 방법 • 신고자 – 전체 신고자,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유형
장애인학대조사 및 사례판정	• 학대조사 – 전체, 지역별 학대조사 • 사례판정 – 전체, 지역별 사례판정 결과 • 상담 및 지원 – 전체, 지역별 상담 및 지원 • 사례종결 • 지역별 상담원 1인당 담당사례
장애인학대사례 분석 결과	• 인구사회학적 요인 – 피해장애인 성별, 연령,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동거여부 •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 장애인학대 유형 –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 장애인학대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연령, 장애유형, 거주유형,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 응급조치, 피해장애인 지원, 지역별 상담 및 지원, 사례종결, 사후 모니터링
특성별 장애인학대사례 분석 결과	•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 지역별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신고자 유형 –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및 연령, 거주유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성별,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 학대 발생장소 –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 학대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연령 –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 응급조치, 사법지원 •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례 – 전체, 지역별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 피해장애인 성별, 연령,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 신고자 유형 –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 응급조치, 사법지원 •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사례 –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신고,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장애인학대 유형



보건복지부
www.mohw.go.kr

2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1. 신고접수
2. 신고접수 방법
3. 신고자

제2장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1. 신고접수

가. 전체 신고접수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1644-8295를 중심으로 장애인학대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언어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면 '장애인학대 의심사례'(이하 학대의심사례)로 분류하고 사례지원 절차에 따라 조사 및 사례판정 등을 실시한다.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신고가 아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차별 관련 사례, 복지 및 일반 법률상담이나 기관문의 등 정보제공이 필요한 사례, 불만이나 하소연을 토로하여 위로나 인정 등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사례, 장애인학대와 무관한 개인 간의 다툼이나 분쟁과 관련된 사례는 '일반사례'로 접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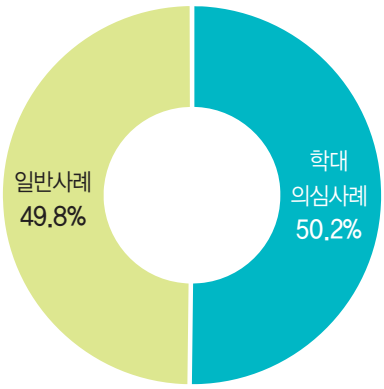
2018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총 3,658건이며, 이 중 학대가 의심되는 신고는 1,835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50.2%를 차지했다. 일반사례는 전체 신고건수의 49.8%인 1,823건이었다.

[표 2-1] 전체 신고접수 건수

(단위: 건, %)

학대의심사례		일반사례		계	
1,835	50.2	1,823	49.8	3,658	100.0

[그림 2-1] 전체 신고접수 건수



전체 신고접수 현황을 월별로 보면 월 평균 304건(8.3%)의 신고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되었고 4월에 385건(10.5%)으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되었다. 그 다음으로 7월 368건(10.1%), 3월 347건(9.5%) 순으로 많은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접수가 가장 적은 달은 2월로 211건(5.8%)이었다.

학대의심사례는 월 평균 153건이 접수되었으며 전체 신고접수현황과 마찬가지로 4월에 229건(12.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7월 193건(10.5%), 3월 173건(9.4%)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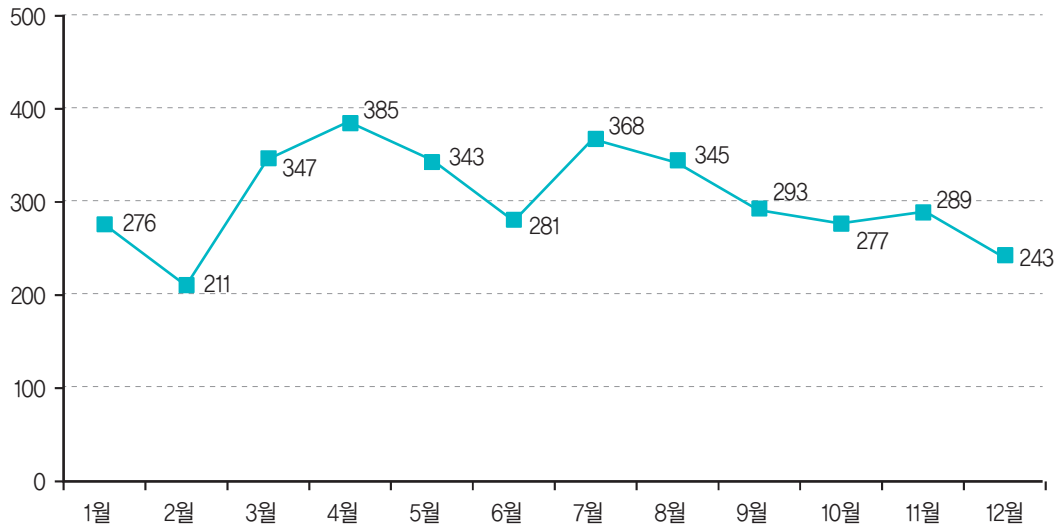
일반사례는 월 평균 152건이 접수되었으며 전체 신고접수현황과 다르게 8월에 197건(10.8%), 7월 175건(9.6%), 3월 174건(9.5%) 순으로 접수건수가 많았다.

[표 2-2] 월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단위: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학대	157	101	173	229	181	142	193	148	129	110	147	125	1,835
일반	119	110	174	156	162	139	175	197	164	167	142	118	1,823
계	276	211	347	385	343	281	368	345	293	277	289	243	3,658

[그림 2-2] 월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나. 지역별 신고접수

지역별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서울이 901건(24.6%)으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기가 395건(10.8%), 부산이 304건(8.3%) 순이었다. 신고접수가 가장 적은 곳은 세종이 87건(2.4%)이었으며, 다음으로 제주가 91건(2.5%)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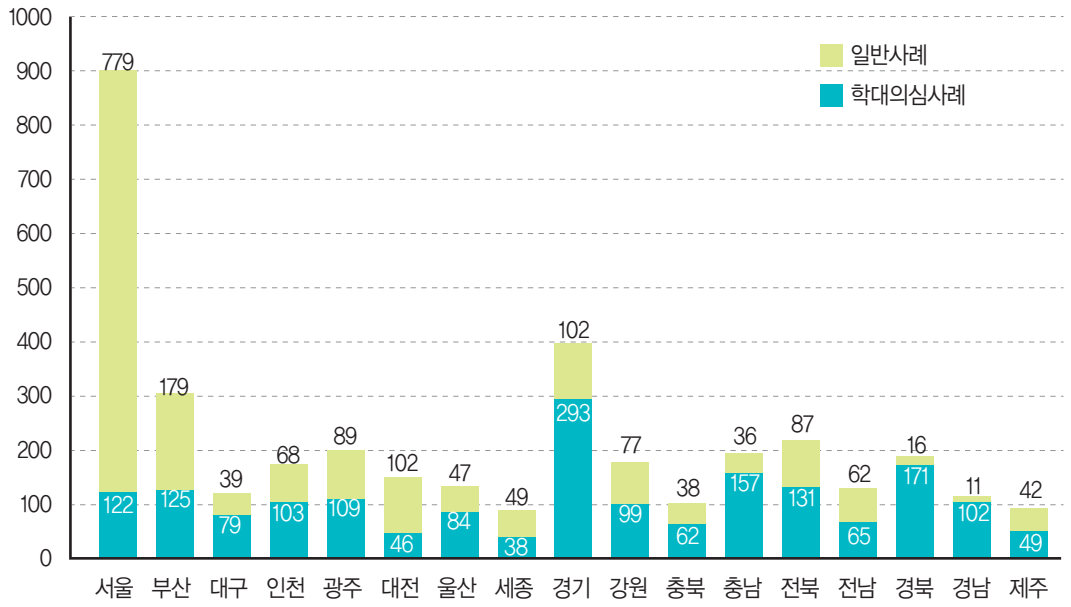
학대의심사례는 지역별로 평균 107.9건이 접수되었으며 경기가 293건(16.0%)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171건(9.3%), 충남이 157건(8.6%)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학대의심사례 접수건수가 적은 곳은 세종 38건(2.1%), 대전 46건(2.5%)이었다.

[표 2-3] 지역별 신고접수 건수

(단위: 건, %)

구분	학대의심사례		일반사례		계	
서울	122	6.6	779	42.7	901	24.6
부산	125	6.8	179	9.8	304	8.3
대구	79	4.3	39	2.1	118	3.2
인천	103	5.6	68	3.7	171	4.7
광주	109	5.9	89	4.9	198	5.4
대전	46	2.5	102	5.6	148	4.0
울산	84	4.6	47	2.6	131	3.6
세종	38	2.1	49	2.7	87	2.4
경기	293	16.0	102	5.6	395	10.8
강원	99	5.4	77	4.2	176	4.8
충북	62	3.4	38	2.1	100	2.7
충남	157	8.6	36	2.0	193	5.3
전북	131	7.1	87	4.8	218	6.0
전남	65	3.5	62	3.4	127	3.5
경북	171	9.3	16	0.9	187	5.1
경남	102	5.6	11	0.6	113	3.1
제주	49	2.7	42	2.3	91	2.5
계	1,835	100.0	1,823	100.0	3,658	100.0

[그림 2-3] 지역별 신고접수 건수



다. 일반사례 신고접수

일반사례는 차별, 정보제공, 정서적 지지, 그 외 장애인학대가 의심되지 않는 기타 사례를 말하며 일반사례에 해당하면 학대조사나 사례회의 없이 상담을 통해 그에 맞는 지원을 하고 사례를 종결한다. 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나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와 같이 시 · 도에서 제정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 차별이나 장애인 인권침해와 관련된 상담을 받고 있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일반사례라도 당사자 면담 및 현장 방문, 사례회의 등을 통해 사례를 지원한다.

2018년 접수된 일반사례는 1,823건이었으며 정보제공사례가 1,219건(66.9%)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지지와 관련된 사례가 267건(14.6%), 기타사례가 176건(9.7%), 차별사례가 161건(8.8%) 순이었다.

[표 2-4] 일반사례 신고접수 건수

(단위: 건, %)

차별		정보제공		정서적 지지		기타		계	
161	8.8	1,219	66.9	267	14.6	176	9.7	1,823	100.0

2. 신고접수 방법

신고는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1644-8295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실로 연결되는 전화신고와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을 통한 온라인신고, 문자, 팩스, 우편, 기관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내방신고, 언론보도 등 지역 상담원이 사례를 알게 되어 접수하는 인지 등의 방법으로 접수된다.

2018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가 접수되는 주된 방법은 전화로, 2,747건(75.1%)이었다. 그 다음으로 신고 없이 상담원이 사례를 인지하는 경우가 261건(7.1%), 신고자가 기관에 찾아와 신고하는 내방이 231건(6.3%)으로 많았다.

[표 2-5] 전체 신고접수 방법

(단위: 건, %)

전화	온라인	문자	팩스	우편	내방	인지	기타	계
2,747	219	9	98	34	231	261	59	3,658
75.1	6.0	0.2	2.7	0.9	6.3	7.1	1.6	100.0

지역별 신고접수방법을 살펴보면 전화신고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었다. 온라인 및 우편신고는 충남, 팩스신고는 대구, 내방신고는 제주, 인지신고는 경북이 많았다. 기타방법에 의한 신고는 세종이 가장 높았는데 2018년도에 시청과 함께 직접 읍 · 면 · 동 주민센터,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신고접수와 상담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표 2-6] 지역별 신고접수 방법

(단위: 건, %)

구분	전화		온라인		문자		팩스		우편		내방		인지		기타		계	
서울	814	90.3	29	3.2	1	0.1	1	0.1	0	0.0	23	2.6	32	3.6	1	0.1	901	100.0
부산	216	71.1	0	0.0	0	0.0	0	0.0	0	0.0	53	17.4	34	11.2	1	0.3	304	100.0
대구	62	52.5	6	5.1	0	0.0	33	28.0	0	0.0	8	6.8	3	2.5	6	5.1	118	100.0
인천	133	77.8	2	1.2	0	0.0	3	1.8	0	0.0	27	15.8	1	0.6	5	2.9	171	100.0
광주	168	84.8	0	0.0	3	1.5	4	2.0	0	0.0	3	1.5	18	9.1	2	1.0	198	100.0
대전	115	77.7	1	0.7	2	1.4	3	2.0	0	0.0	17	11.5	2	1.4	8	5.4	148	100.0
울산	115	87.8	1	0.8	0	0.0	0	0.0	0	0.0	10	7.6	2	1.5	3	2.3	131	100.0
세종	47	54.0	0	0.0	0	0.0	0	0.0	0	0.0	13	14.9	2	2.3	25	28.7	87	100.0
경기	303	76.7	57	14.4	1	0.3	24	6.1	1	0.3	3	0.8	5	1.3	1	0.3	395	100.0
강원	124	70.5	6	3.4	0	0.0	11	6.3	0	0.0	16	9.1	19	10.8	0	0.0	176	100.0
충북	64	64.0	12	12.0	0	0.0	5	5.0	0	0.0	15	15.0	4	4.0	0	0.0	100	100.0
충남	90	46.6	63	32.6	0	0.0	4	2.1	28	14.5	4	2.1	4	2.1	0	0.0	193	100.0
전북	172	78.9	3	1.4	0	0.0	1	0.5	1	0.5	3	1.4	38	17.4	0	0.0	218	100.0
전남	104	81.9	14	11.0	0	0.0	0	0.0	0	0.0	7	5.5	0	0.0	2	1.6	127	100.0
경북	66	35.3	18	9.6	2	1.1	7	3.7	1	0.5	6	3.2	83	44.4	4	2.1	187	100.0
경남	93	82.3	7	6.2	0	0.0	2	1.8	3	2.7	7	6.2	1	0.9	0	0.0	113	100.0
제주	61	67.0	0	0.0	0	0.0	0	0.0	0	0.0	16	17.6	13	14.3	1	1.1	91	100.0
계	2,747	75.1	219	6.0	9	0.2	98	2.7	34	0.9	231	6.3	261	7.1	59	1.6	3,658	100.0

3. 신고자

가. 전체 신고자 유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는 21개 직군의 종사자에게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

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1.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 강사 · 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 · 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 ·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1) 제17호는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로 변경 (2019.7.16.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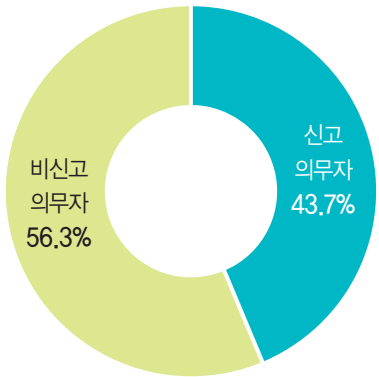
2018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1,835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802건(43.7%)이었으며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033건(56.3%)이었다.

[표 2-7] 전체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계	
802	43.7	1,033	56.3	1,835	100.0

[그림 2-4] 전체 신고자 유형



나. 신고의무자 유형

신고의무자의 직군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구급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 · 중 · 고 교직원 및 전문상담 · 산학겸임 교사, 학원 강사 및 교습소 직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 · 재활센터 종사자, 장기요양요원으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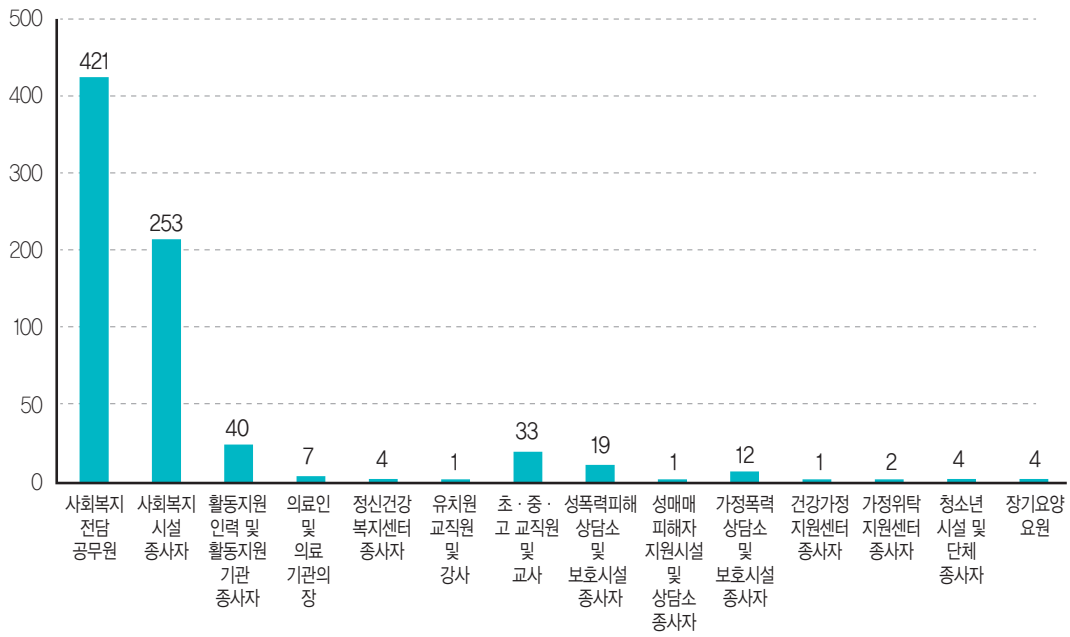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의한 신고가 421건으로 전체의 52.5%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253건(31.5%)이었다. 반면 의료기사, 구급대원, 보육교직원, 학원 강사 및 교습소 직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청소년보호 · 재활센터 종사자에 의한 신고는 0건이었다. 다양한 신고의무자 직군에서 장애인학대 신고가 접수될 수 있도록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나 장애인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2-8]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건수

(단위: 건, %)

신고의무자 유형	건수	비율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421	52.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53	31.5
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40	5.0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7	0.9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4	0.5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1	0.1
초 · 중 · 고 교직원 및 교사	33	4.1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19	2.4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1	0.1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12	1.5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1	0.1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2	0.2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4	0.5
장기요양요원	4	0.5
계	802	100.0

[그림 2-5]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건수



다. 비신고의무자 유형

비신고의무자 유형은 크게 본인, 가족 및 친인척, 기관종사자, 타인, 파악안됨으로 분류한다. 가족 및 친인척에는 배우자,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이 포함되고, 기관종사자는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일반공무원, 신고의무자 아닌 장애인단체 · 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아동 · 청소년 · 여성 · 노인 · 이주민 등의 단체 종사자, 사회복무요원,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애인고용공단과 같은 유관기관 종사자 등을 말한다. 타인이란 동거인, 이웃, 지인, 고용주(근로계약과 무관한 사실상의 고용주 포함), 피해장애인과 관련이 없거나 모르는 사람을 의미하고, 신고자 중 피해장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악안됨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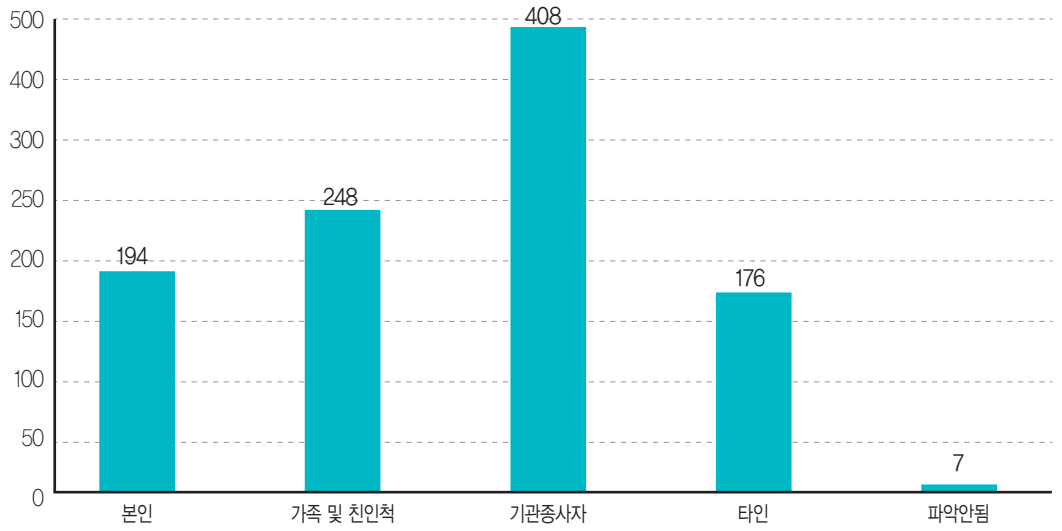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1,033건 중 기관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408건(39.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신고가 248건(24.0%)이었다. 피해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194건(18.8%), 타인이 신고한 경우는 176건(17.0%)이었다.

[표 2-9]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건수

(단위: 건, %)

비신고의무자 유형	건수	비율
본인	194	18.8
가족 및 친인척	248	24.0
기관종사자	408	39.5
타인	176	17.0
파악안됨	7	0.7
계	1,033	100.0

[그림 2-6]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건수





보건복지부
www.mohw.go.kr

3

장애인학대조사 및 사례판정

1. 학대조사
2. 사례판정
3. 상담 및 지원
4. 사례종결
5. 지역별 상담원 1인당 담당사례

제3장

장애인학대조사 및 사례판정

1. 학대조사

가. 전체 학대조사

장애인학대조사란 신고접수 된 장애인학대 의심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모든 형태의 조사를 말한다. 조사 시에는 피해장애인에 대한 면담, 학대행위자 등 관련자에 대한 면담, 증거 및 입증 서류 확인을 진행하며 필요시 조사과정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학대조사는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여러 차례 이뤄지더라도 이를 조사 횟수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2018년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1,835건 중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479건에 대해 학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율은 80.6%이었다. 2018년 사례 중 2018년이 아닌 2019년에 조사가 진행된 경우, 조사를 미실시한 것으로 분석하였으므로 2018년에 접수된 사례의 실제 조사 실시 비율은 이보다 높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접수된 모든 사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경찰이나 유관 전문기관에서 이미 조사를 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불필요한 경우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제3자에 의한 신고로 피해장애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피해장애인을 찾지 못하거나, 피해장애인 본인의 명시적 개입거부,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표 3-1] 전체 학대조사

(단위: 건, %)

학대의심사례	학대조사	당해연도 조사 실시비율
1,835	1,479	80.6

나. 지역별 학대조사

지역별 학대조사 실시율을 살펴보면 제주는 접수된 모든 사례에 대해 100.0% 조사를 실시하였다. 충남 98.7%, 전북 96.2%, 전남 93.8%, 대구 93.7%, 충북 93.5%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의 경우 조사율이 51.5%로 가장 낮았다. 경기도는 2018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구(547,386명, 전국 1위, 21.2%)가 살고 있고 장애인복지시설 역시 전국에서 가장 많다.[2] 2018년 경기에 신고된 학대의심사례는 29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나 접수 대비 상담원(2인) 부족으로 학대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표 3-2] 지역별 학대조사 건수

(단위: 건, %)

구분	학대의심사례	조사건수	실시비율
서울	122	108	88.5
부산	125	85	68.0
대구	79	74	93.7
인천	103	59	57.3
광주	109	94	86.2
대전	46	40	87.0
울산	84	70	83.3
세종	38	30	78.9
경기	293	151	51.5
강원	99	90	90.9
충북	62	58	93.5
충남	157	155	98.7
전북	131	126	96.2
전남	65	61	93.8
경북	171	155	90.6
경남	102	74	72.5
제주	49	49	100.0
계	1,835	1,479	80.6

2)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기준 경기도내 장애인거주시설(314개), 지역 및 재활시설(222개), 직업재활시설(106개)임

2. 사례판정

가. 전체 사례판정

사례판정이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 사례판정을 위해서는 학대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특히 피해장애인 및 행위자를 면담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 외에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례회의에서 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비학대사례로 판정하고 사례회의에서 사례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지역별로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거쳐 학대여부를 판정한다. 학대사례란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사례를 말한다. 잠재위험사례란 학대가 의심되지만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사례, 현재는 학대로 판정하기 어려우나 향후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예방을 위한 사후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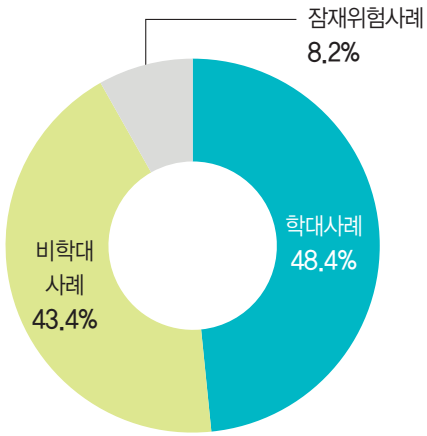
비학대사례는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학대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사례, 예를 들면 허위신고나 장애와 무관한 다툼 등을 말한다. 비학대사례의 경우 통상 피해자 지원없이 개입을 종료한다.

2018년 사례판정 결과를 보면 학대의심사례 1,835건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889건으로 전체의 48.4%로 나타났고, 비학대사례는 796건(43.4%), 잠재위험사례는 150건(8.2%)이었다.

[표 3-3] 전체 사례판정

(단위: 건, %)

학대사례		비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계	
889	48.4	796	43.4	150	8.2	1,835	100.0



[그림 3-1] 전체 사례판정

나. 지역별 사례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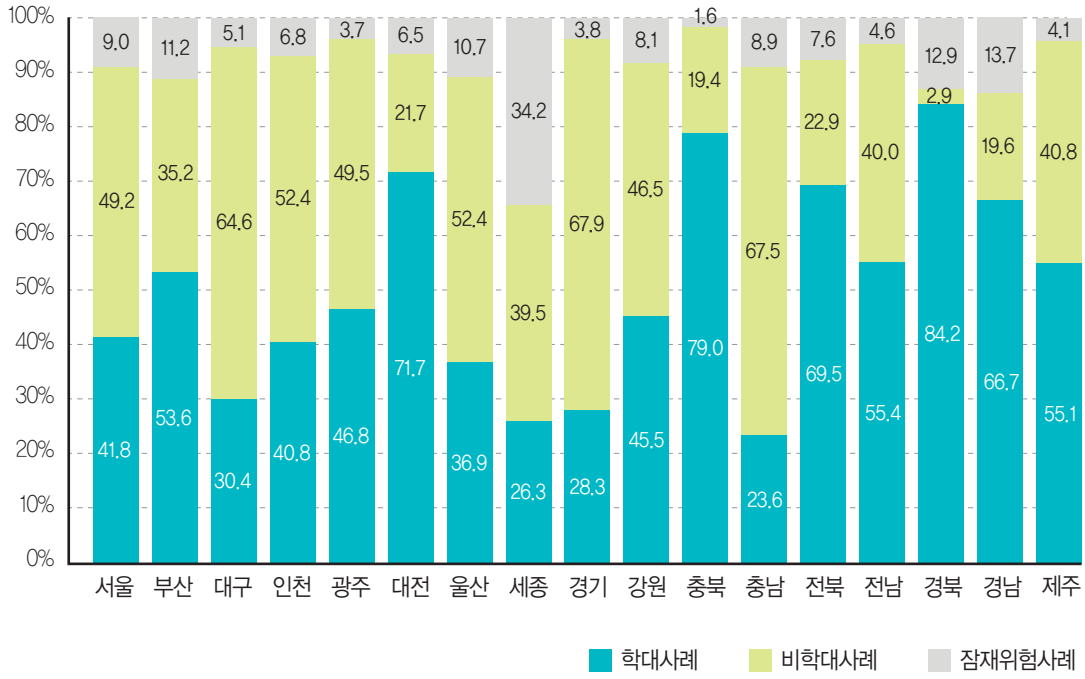
17개 지역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중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비율은 평균 48.4%였으나 지역별로 23.6%(충남)에서 84.2%(경북)로 나타나 장애인학대 판정 비율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4] 지역별 사례판정

(단위: 건, %)

구분	학대사례		비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계	
서울	51	41.8	60	49.2	11	9.0	122	100.0
부산	67	53.6	44	35.2	14	11.2	125	100.0
대구	24	30.4	51	64.6	4	5.1	79	100.0
인천	42	40.8	54	52.4	7	6.8	103	100.0
광주	51	46.8	54	49.5	4	3.7	109	100.0
대전	33	71.7	10	21.7	3	6.5	46	100.0
울산	31	36.9	44	52.4	9	10.7	84	100.0
세종	10	26.3	15	39.5	13	34.2	38	100.0
경기	83	28.3	199	67.9	11	3.8	293	100.0
강원	45	45.5	46	46.5	8	8.1	99	100.0
충북	49	79.0	12	19.4	1	1.6	62	100.0
충남	37	23.6	106	67.5	14	8.9	157	100.0
전북	91	69.5	30	22.9	10	7.6	131	100.0
전남	36	55.4	26	40.0	3	4.6	65	100.0
경북	144	84.2	5	2.9	22	12.9	171	100.0
경남	68	66.7	20	19.6	14	13.7	102	100.0
제주	27	55.1	20	40.8	2	4.1	49	100.0
계	889	48.4	796	43.4	150	8.2	1,835	100.0

[그림 3-2] 지역별 사례판정



3. 상담 및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에 대해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지만 당사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학대사례인 경우에도 일부 개입하여 당사자를 지원하고 있다.

가. 전체 상담 및 지원

학대의심사례 1,835건에 대해 총 15,885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했으며 사례 1건당 지원횟수는 평균 8.7회로 나타났다.

[표 3-5] 학대의심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단위: 건, 회)

학대의심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사례 1건당 지원 횟수
1,835	15,885	8.7

나. 지역별 상담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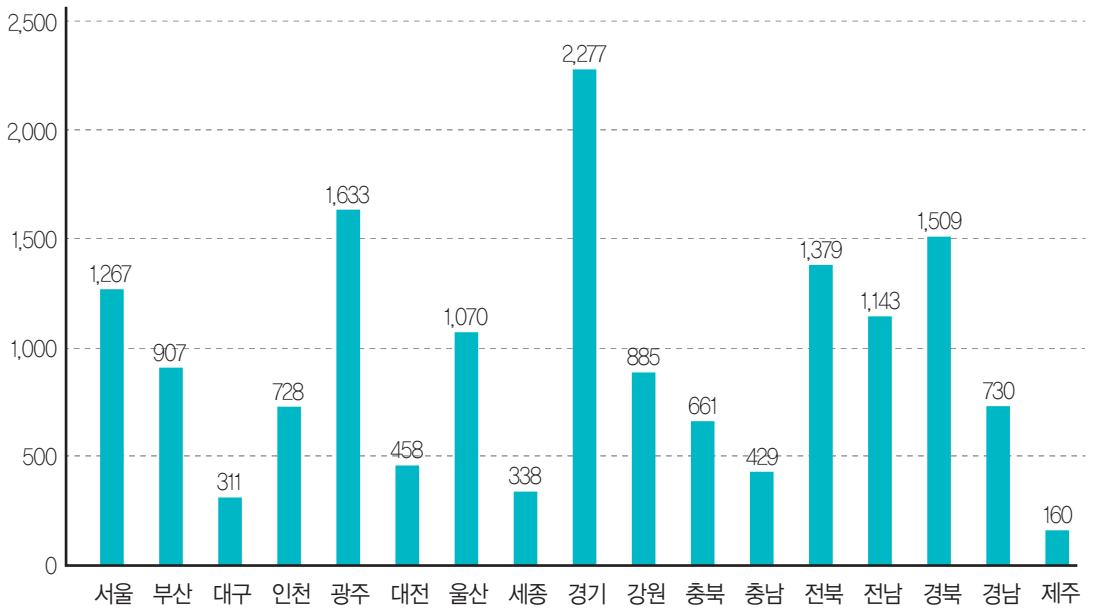
학대의심사례 1건당 가장 많은 상담 및 지원이 실시된 지역은 전남으로 평균 17.6회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광주가 평균 15.0회, 울산이 평균 12.7회 순이었다.

[표 3-6] 지역별 상담 및 지원

(단위: 건, 회)

지역	학대의심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횟수
서울	122	1,267	10.4
부산	125	907	7.3
대구	79	311	3.9
인천	103	728	7.1
광주	109	1,633	15.0
대전	46	458	10.0
울산	84	1,070	12.7
세종	38	338	8.9
경기	293	2,277	7.8
강원	99	885	8.9
충북	62	661	10.7
충남	157	429	2.7
전북	131	1,379	10.5
전남	65	1,143	17.6
경북	171	1,509	8.8
경남	102	730	7.2
제주	49	160	3.3

[그림 3-3] 지역별 상담 및 지원



4. 사례종결

2018년 학대의심사례 1,835건 중 총 1,279건의 사례가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결되어 당해연도 사례종결율은 69.7%로 나타났다.

[표 3-7] 사례종결

(단위: 건, %)

학대의심사례	종결사례	당해연도 사례종결율
1,835	1,279	69.7

5. 지역별 상담원 1인당 담당사례

2018년도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1,835건에 대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 1인당 평균 45.9건의 사례를 담당했으며 평균 397.1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였다. 상담원 1인당 담당사례 건수가 많았던 지역은 경기가 146.5건, 경북이 85.5건, 대구가 79.0건, 충남이 78.5건이었다. 상담원 1인당 2018년에 진행한 상담 및 지원 횟수는 경기가 1,138.5회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북이 754.5회, 전북이 689.5회, 전남이 571.5회 순이었다.

[표 3-8] 지역별 상담원 1인당 담당사례

(단위: 명, 건, 회)

구분	상담원[3] (현원)	학대의심 사례	1인당 담당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1인당 상담 및 지원 횟수
서울	8	122	15.3	1,267	158.4
부산	2	125	62.5	907	453.5
대구	1	79	79.0	311	311.0
인천	2	103	51.5	728	364.0
광주	3	109	36.3	1,633	544.3
대전	2	46	23.0	458	229.0
울산	3	84	28.0	1,070	356.7
세종	1	38	38.0	338	338.0
경기	2	293	146.5	2,277	1,138.5
강원	2	99	49.5	885	442.5
충북	2	62	31.0	661	330.5
충남	2	157	78.5	429	214.5
전북	2	131	65.5	1,379	689.5
전남	2	65	32.5	1,143	571.5
경북	2	171	85.5	1,509	754.5
경남	2	102	51.0	730	365.0
제주	2	49	24.5	160	80.0
계	40	1,835	45.9	15,885	397.1

3) 지역별로 상담원 수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국고보조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예산 지원으로 추가적으로 상담원을 채용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4

장애인학대사례 분석 결과

1. 인구사회학적 요인
2.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3. 장애인학대 유형
4.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제4장

장애인학대사례 분석 결과

1.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 피해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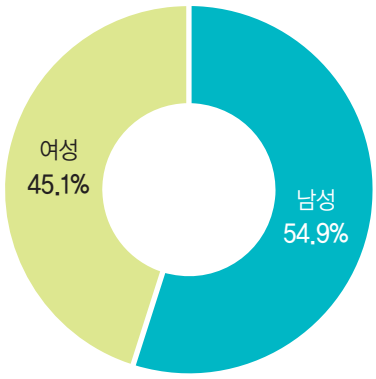
1) 피해장애인 성별

2018년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1,835건 중 학대로 판정된 889건의 피해장애인 성별을 보면 남성이 488건(54.9%)으로 여성 401건(45.1%)보다 9.8%p 높게 나타났다.

[표 4-1] 피해장애인 성별

(단위: 건, %)

남성		여성		계	
488	54.9	401	45.1	889	100.0



[그림 4-1] 피해장애인 성별

2) 피해장애인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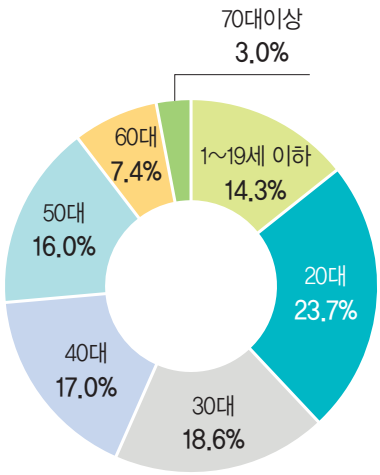
피해장애인 연령을 보면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20대(20~29세)가 211건(23.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가 165건(18.6%), 40대가 151건(17.0%), 50대가 142건(16.0%)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 피해장애인 연령

(단위: 건, %)

연령	건수	비율
1~19세 이하	127	14.3
20대(20~29세)	211	23.7
30대(30~39세)	165	18.6
40대(40~49세)	151	17.0
50대(50~59세)	142	16.0
60대(60~69세)	66	7.4
70대 이상	27	3.0
계	889	100.0

[그림 4-2] 피해장애인 연령



3)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의3에 따라 장애인학대 피해자가 미등록 장애인인 경우에도 등록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학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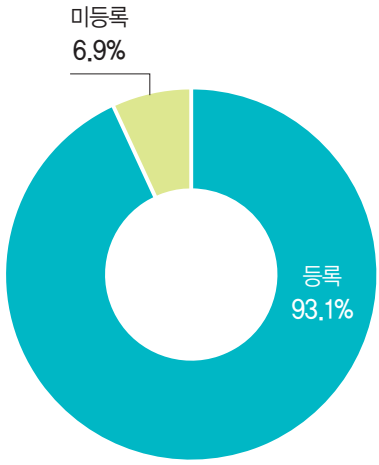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889건 중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828건(93.1%)이었으며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61건(6.9%)이었다.

[표 4-3] 장애인 등록여부

(단위: 건, %)

등록	미등록	계
828	61	889
93.1	6.9	100.0

[그림 4-3] 장애인 등록여부



장애인학대사례 889건을 분석하면 지적장애가 전체 장애유형 중 66.0%(587건)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장애 6.9%(61건), 정신장애 5.6%(50건), 뇌병변장애 5.2%(46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학대사례는 전체의 74.1%(659건)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특성에 맞는 학대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제도 정비 등 종합적인 맞춤형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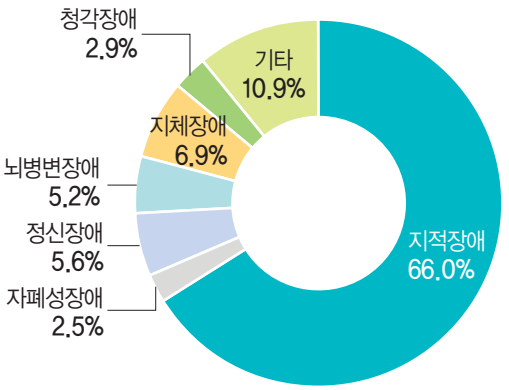
[표 4-4] 피해장애인 주장애유형[4)]

(단위: 건, %)

장애유형	건수	비율
지체장애	61	6.9
뇌병변장애	46	5.2
시각장애	15	1.7
청각장애	26	2.9
언어장애	13	1.5
지적장애	587	66.0
자폐성장애	22	2.5
정신장애	50	5.6
신장장애	3	0.3
심장장애	–	–
호흡기장애	–	–
간장애	–	–
안면장애	2	0.2
장루 · 요루장애	–	–
뇌전증장애	3	0.3
미등록	61	6.9
계	889	100.0

4)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피해장애인의 주장애 및 부장애유형을 모두 확인한다. 본 장의 장애유형 분석은 피해장애인의 주장애유형을 기초로 하였다.

[그림 4-4] 피해장애인 주장애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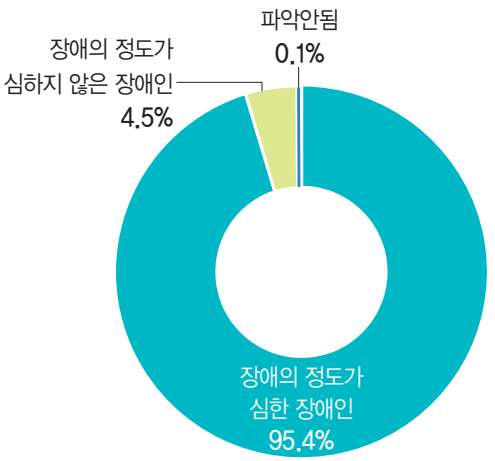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2019년 7월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본 분석에서는 기존의 1~3급의 장애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의 장애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하여 표현하였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학대사례 828건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은 790건으로 전체의 95.4%를 차지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사람은 4.5%(37건), 장애의 정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0.1%(1건)이었다.

[표 4-5] 피해장애인 장애정도

(단위: 건, %)

장애정도	건수	비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790	95.4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	37	4.5
파악안됨	1	0.1
계	828	100.0

[그림 4-5] 피해장애인 장애정도



4)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신고 당시 피해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재가와 시설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시설이라 함은 다수가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관리자가 있는 공간으로 사회복지시설 중 거주시설, 미신고시설,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외에는 모두 재가로 보고 있다. 학대로 판단한 사례 중 재가사례는 644건(72.4%), 시설사례는 245건(27.6%)이었다.

[표 4-6]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단위: 건, %)

재가		시설		계	
644	72.4	245	27.6	889	100.0

5)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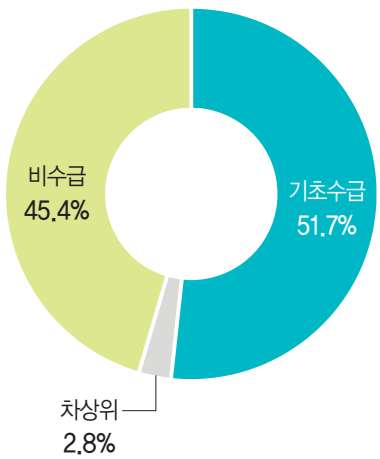
피해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를 살펴보면 피해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례가 460건(51.7%),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례가 404건(45.4%), 차상위에 해당하는 사례가 25건(2.8%)으로 나타났다.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에서 장애인세대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전체의 19.1%라는 점과 비교했을 때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7]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단위: 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	비수급자	계
460	25	404	889
51.7	2.8	45.4	100.0

[그림 4-6]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나. 학대행위자

1)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

장애인학대 사건의 행위자는 여러 명일 수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한 사건의 행위자가 다수이더라도 주 행위자 1명에 대한 정보만 통계로 집계하고 있어 본 보고서의 피해장애인의 수와 학대행위자의 수는 동일하게 889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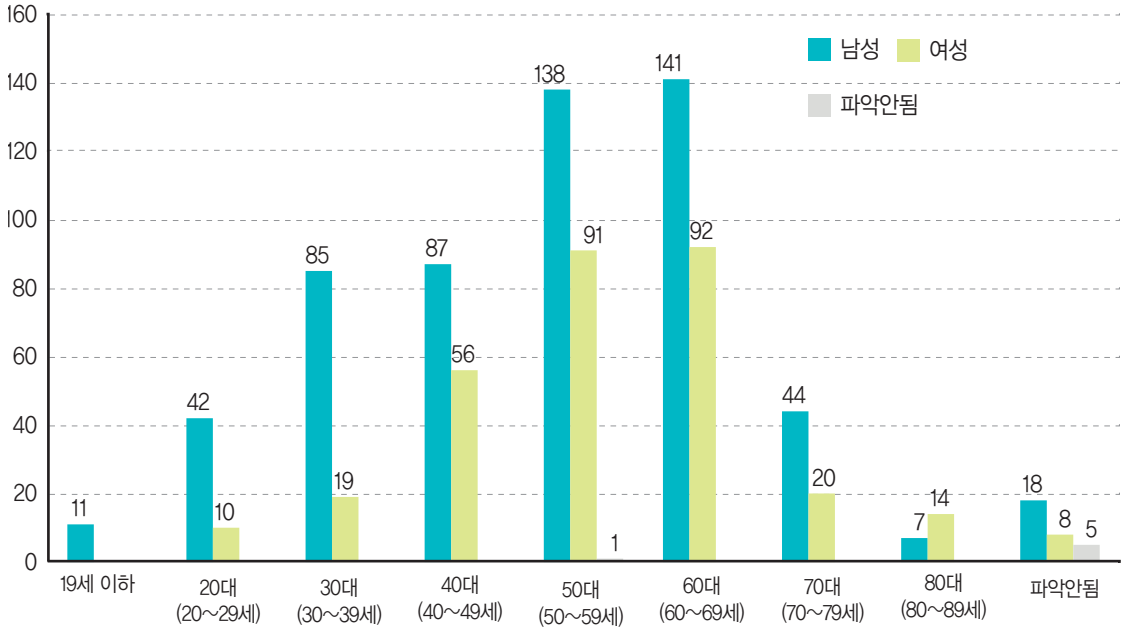
2018년 학대로 판단된 사례 889건의 학대행위자 성별을 보면 남성이 573건(64.5%), 여성이 310건(34.9%), 성별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6건(0.7%)이었으며 행위자가 남성인 경우가 여성인 경우보다 약 1.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60대(60~69세)가 233건(26.2%)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230건(25.9%), 40대 143건(16.1%) 순으로 나타났다.

[표 4-8]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

(단위: 건, %)

구분	남성		여성		파악안됨		계	
1~19세 이하	11	1.9	–	–	–	–	11	1.2
20대(20~29세)	42	7.3	10	3.2	–	–	52	5.8
30대(30~39세)	85	14.8	19	6.1	–	–	104	11.7
40대(40~49세)	87	15.2	56	18.1	–	–	143	16.1
50대(50~59세)	138	24.1	91	29.4	1	16.7	230	25.9
60대(60~69세)	141	24.6	92	29.7	–	–	233	26.2
70대(70~79세)	44	7.7	20	6.5	–	–	64	7.2
80대(80~89세)	7	1.2	14	4.5	–	–	21	2.4
파악안됨	18	3.1	8	2.6	5	83.3	31	3.5
계	573	100.0	310	100.0	6	100.0	889	100.0

[그림 4-7]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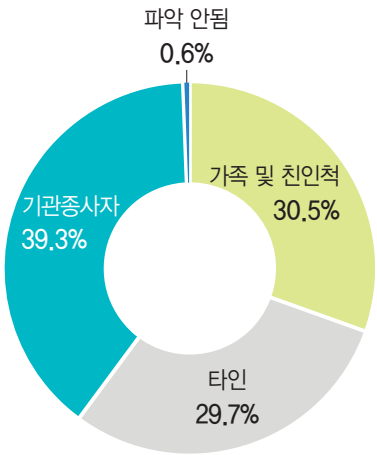


2)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는 가족 및 친인척, 타인, 기관종사자, 파악안됨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족 및 친인척에는 배우자, 부모,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그 외 친척이 포함되며, 법률적 관계를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타인에는 동거인, 이웃, 지인, 고용주, 모르는 사람이 포함된다. 지인에는 직장 동료, 선후배, 친구 등이 포함되며, 고용주에는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고용주가 포함된다. 기관종사자는 피해장애인과 관련된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피해장애인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 종사자, 장애인거주시설 및 이용시설 종사자, 그 외 피해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 장애인단체,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같은 사회복지관련 기관의 종사자가 이에 해당한다.

학대판정사례 889건 중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39.3%(349건)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 및 친인척이 30.5%(271건), 타인이 29.7%(264건), 파악안됨이 0.6%(5건)이었다. 기관종사자 중에는 행위자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인 경우가 23.1%(205건)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가 8.3%(74건)로 그 뒤를 이었다. 가족 및 친인척 중에 부모가 행위자인 경우가 12.9%(115건)였으며 그 다음으로 형제자매(그의 배우자)가 6.0%(53건), 배우자가 5.8%(52건) 순이었다. 타인 중에는 행위자가 지인인 경우가 10.5%(93건)로 가장 많았고, 고용주가 6.5%(58건), 이웃이 5.1%(45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8]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대분류)



[표 4-9]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단위: 건, %)

관계		건수	비율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52	5.8
	부모	115	12.9
	조부모	7	0.8
	자녀	13	1.5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53	6.0
	그외 친척	31	3.5
	소계	271	30.5
타인	동거인	26	2.9
	이웃	45	5.1
	지인	93	10.5
	고용주	58	6.5
	모르는 사람	42	4.7
	소계	264	29.7
기관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31	3.5
	의료기관 종사자	5	0.6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205	23.1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74	8.3
	그외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34	3.8
	소계	349	39.3
파악안됨		5	0.6
계		889	100.0

3)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동거여부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동거여부를 보면 학대판정사례 889건 중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이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647건(72.8%)이었으며, 동거하는 경우가 237건(26.7%), 파악되지 않은 경우가 5건(0.6%)이었다.

[표 4-10]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동거여부

(단위: 건, %)

동거		비동거		파악안됨		계	
237	26.7	647	72.8	5	0.6	889	100.0

2.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장애인학대는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학대유형 및 행위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해장애인의 거주지, 학대행위자의 거주지, 직장 및 일터, 교육기관, 의료기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이용시설,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 종교시설을 주요 학대발생장소로 보고 있다.

피해장애인의 거주지는 피해장애인의 주거 공간에서 학대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학대행위자의 거주지는 행위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이 함께 살더라도 행위자의 지배하에 있는 공간이라면 이는 학대행위자의 거주지로 본다. 직장 및 일터는 고용계약과 무관하게 피해장애인이 일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논과 밭, 과수원 등지에서 피해장애인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장소에서 학대가 있었다면 논과 밭, 과수원 등지를 직장 및 일터로 본다. 교육기관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 · 중 · 고, 학원 등이 포함된다.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한의원, 조산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을 말한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거주시설을 말하며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도 이에 포함된다. 장애인이용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등을 말한다.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은 장애인 거주 및 이용시설을 제외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을 말한다.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기관, 아동 · 청소년 등 타 사회복지관련기관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종교시설은 교회, 절, 기도원 등을 말한다. 그리고 피해자나 행위자의 집이 아닌 제 3자의 집, 길거리 등의 장소에서도 학대가 발생할 수 있기에 기타 항목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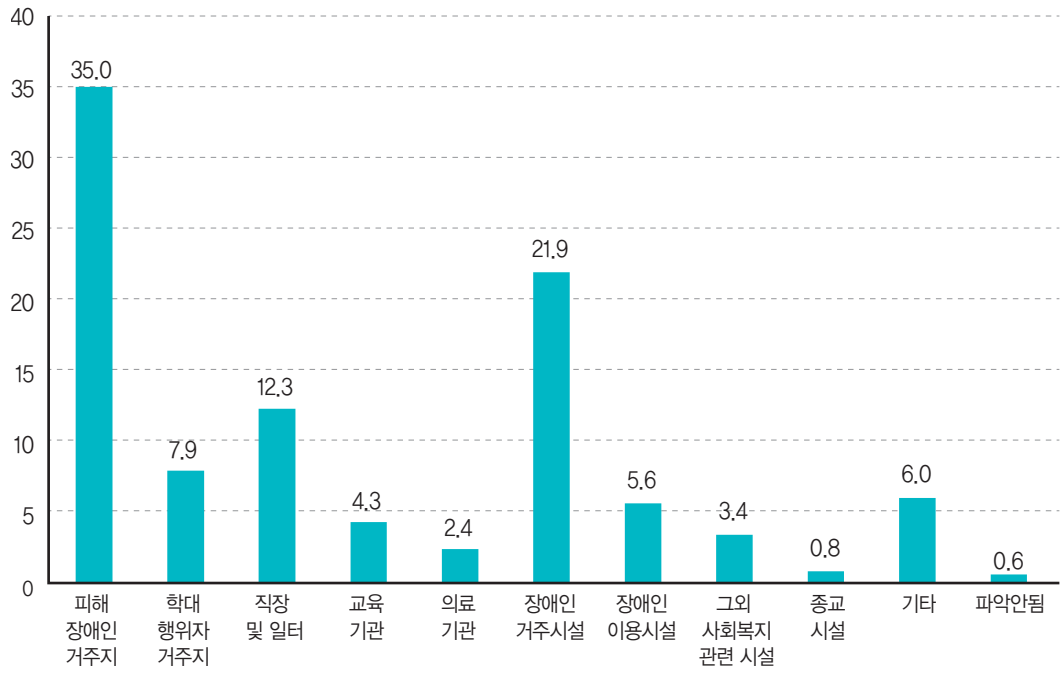
학대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장소는 피해장애인의 거주지가 35.0%(311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거주시설이 21.9%(195건), 직장 및 일터가 12.3%(109건), 학대행위자의 거주지가 7.9%(70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1]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단위: 건, %)

발생장소		건수	비율
피해장애인의 거주지		311	35.0
학대행위자의 거주지		70	7.9
직장 및 일터		109	12.3
교육기관		38	4.3
의료기관		21	2.4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195	21.9
	장애인이용시설	50	5.6
그외 사회복지관련 시설		30	3.4
종교시설		7	0.8
기타		53	6.0
파악안됨		5	0.6
계		889	100.0

[그림 4-9]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3. 장애인학대 유형

장애인학대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언어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이 정의에 기초하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 방임으로 장애인학대를 분류하고 있다.

신체적 학대는 피해장애인의 몸에 물리적(유형력)인 힘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서적 학대는 언어적인 방법(폭언, 협박, 비하 등)이나 비언어적인 방법(무시, 비웃음 등) 등 다양한 형태로 장애를 가진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심한 수치심, 모욕감,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적 학대는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 성폭행, 성매매 등 성적착취,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경제적 착취는 장애인의 금전, 가치 있는 물건 등 재산을 힘으로 빼앗거나 장애인을 속여서 스스로 내어 놓도록 함으로써 행위자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유기는 보호의무 있는 사람(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후견인 등)이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것, 방임은 보호의무 있는 사람이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보호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장애인학대사례를 보면 한 사건에 여러 학대유형이 동반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 6가지 장애인학대 유형 외에 피해장애인이 중복하여 경험한 학대를 '중복 학대'라는 하나의 유형으로 두어 총 7가지 장애인학대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로, 중복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피해장애인이 경험한 학대를 각각 하나의 유형으로 보고 분석한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로 나눠 분석하였다.

가. 장애인학대 유형

1)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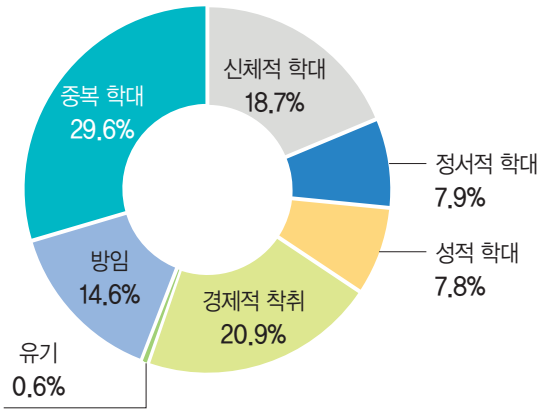
중복 학대를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장애인학대 유형을 분석한 결과 학대판정사례 889건 중 중복 학대는 29.6%(263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경제적 착취가 20.9%(186건), 신체적 학대가 18.7%(166건), 방임이 14.6%(130건), 정서적 학대가 7.9%(70건), 성적 학대가 7.8%(69건), 유기가 0.6%(5건)이었다.

[표 4-12]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건, %)

학대 유형	건수	비율
신체적 학대	166	18.7
정서적 학대	70	7.9
성적 학대	69	7.8
경제적 착취	186	20.9
유기	5	0.6
방임	130	14.6
중복 학대	263	29.6
계	889	100.0

[그림 4-10]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2) 장애인학대 유형II(중복 학대 미분류)

피해장애인이 경험한 학대유형을 중복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각각 하나의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신체적 학대가 27.5%(339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착취는 24.5%(302건), 방임은 18.6%(229건), 정서적 학대는 17.9%(221건), 성적 학대가 9.0%(111건), 유기가 2.6%(32건)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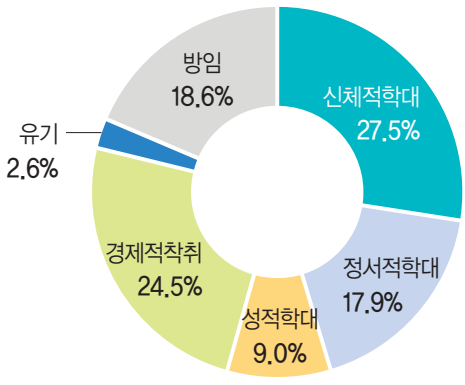
장애인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에 관해 아동학대와 노인학대와의 차이점이 드러난다. 우선, 아동학대의 경우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 또는 경제적 학대가 존재하지 않고, 노인학대의 경우 경제적 학대라는 유형이 있지만 2018년 기준 경제적 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4.7%로 네 번째로 많은 학대유형이다. 장애인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20.9%)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학대유형이라는 점에서 아동학대나 노인학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에서도 일정부분 다른 형태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4-13] 장애인학대 유형II(중복 학대 미분류)

(단위: 건, %)

학대 유형	건수	비율
신체적 학대	339	27.5
정서적 학대	221	17.9
성적 학대	111	9.0
경제적 착취	302	24.5
유기	32	2.6
방임	229	18.6
계	1,234	100.0

[그림 4-11] 장애인학대 유형II(중복 학대 미분류)



나. 장애인학대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1)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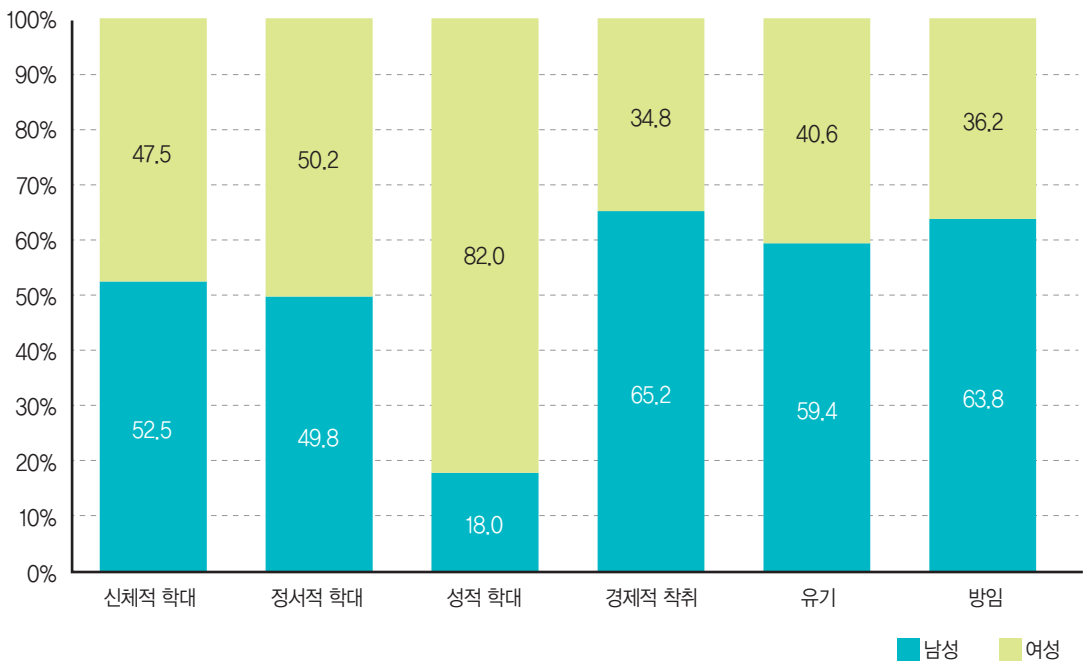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1.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제적 착취와 방임에서는 각각 30.4%p, 27.6%p로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정서적 학대와 성적 학대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특히 성적 학대의 경우 여성이 64.0%p로 높은 차이를 보였다.

[표 4-14]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남성	178	52.5	110	49.8	20	18.0	197	65.2	19	59.4	146	63.8	670	54.3
여성	161	47.5	111	50.2	91	82.0	105	34.8	13	40.6	83	36.2	564	45.7
계	339	100.0	221	100.0	111	100.0	302	100.0	32	100.0	229	100.0	1,234	100.0

[그림 4-12]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2)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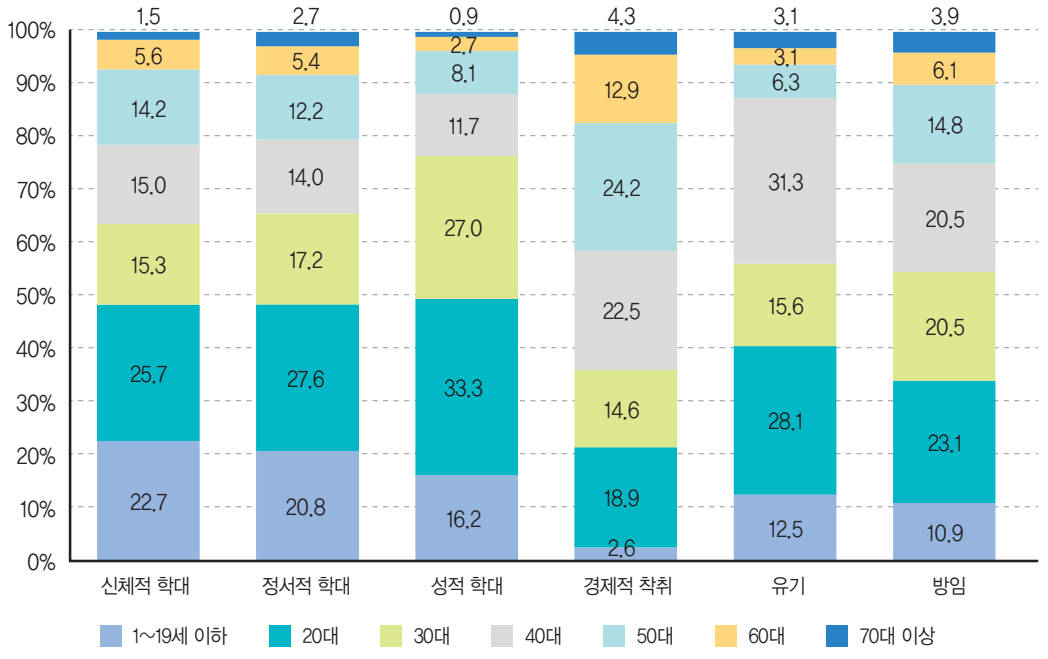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의 연령을 보면 20대부터 50대까지 넓은 분포로 퍼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는 20대 다음으로 1~19세 이하, 30대 순으로 많았고 정서적 학대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성적 학대는 20대 다음으로 30대, 1~19세 이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는 다른 유형과 다르게 5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0대, 20대 순이었다. 유기는 40대에서, 방임은 20대에서 40대까지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4-15]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1~19세 이하	77	22.7	46	20.8	18	16.2	8	2.6	4	12.5	25	10.9	178	14.4
20대	87	25.7	61	27.6	37	33.3	57	18.9	9	28.1	53	23.1	304	24.6
30대	52	15.3	38	17.2	30	27.0	44	14.6	5	15.6	47	20.5	216	17.5
40대	51	15.0	31	14.0	13	11.7	68	22.5	10	31.3	47	20.5	220	17.8
50대	48	14.2	27	12.2	9	8.1	73	24.2	2	6.3	34	14.8	193	15.6
60대	19	5.6	12	5.4	3	2.7	39	12.9	1	3.1	14	6.1	88	7.1
70대 이상	5	1.5	6	2.7	1	0.9	13	4.3	1	3.1	9	3.9	35	2.8
계	339	100.0	221	100.0	111	100.0	302	100.0	32	100.0	229	100.0	1,234	100.0

[그림 4-13]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3) 장애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장애인학대 유형 1,234건 중 피해자의 장애유형을 확인할 수 없는 사례를 제외한 1,135건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은 신체적 학대가 37.6%(32건)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서적 학대가 27.1%(23건)로 나타났다. 뇌병변장애인은 신체적 학대가 31.7%(19건), 그 다음으로 방임 사례가 23.3%(14건)로 높게 나타났으며 청각장애인은 경제적 착취 사례가 41.7%(15건)로 가장 많았다. 지적장애인은 경제적 착취가 25.5%(205건)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가 24.5%(197건)였다. 자폐성장애인은 신체적 학대가 67.9%(19건)로 많았고, 정신장애인은 경제적 착취 비율이 30.7%(23건)로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16] 장애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지체	32	37.6	23	27.1	4	4.7	14	16.5	1	1.2	11	12.9	85	100.0
뇌병변	19	31.7	12	20.0	7	11.7	8	13.3	–	–	14	23.3	60	100.0
시각	6	28.6	9	42.9	–	–	4	19.0	1	4.8	1	4.8	21	100.0
청각	10	27.8	7	19.4	2	5.6	15	41.7	–	–	2	5.6	36	100.0
언어	7	41.2	5	29.4	1	5.9	3	17.6	–	–	1	5.9	17	100.0
지적	197	24.5	127	15.8	87	10.8	205	25.5	17	2.1	170	21.2	803	100.0
자폐성	19	67.9	7	25.0	1	3.6	–	–	–	–	1	3.6	28	100.0
정신	18	24.0	13	17.3	1	1.3	23	30.7	8	10.7	12	16.0	75	100.0
신장	1	25.0	–	–	–	–	3	75.0	–	–	–	–	4	100.0
안면	–	–	–	–	2	100.0	–	–	–	–	–	–	2	100.0
뇌전증	–	–	–	–	–	–	2	50.0	1	25.0	1	25.0	4	100.0
계	309	27.2	203	17.9	105	9.3	277	24.4	28	2.5	213	18.8	1,135	100.0

4)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장애인학대 유형별로 피해장애인의 거주유형을 보면 방임을 제외한 모든 학대유형에서 재가에 거주하는 경우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방임의 경우 시설이 56.3%, 재가가 43.7%로 나타났는데 시설에서 발생하는 방임사례로는 야간 근무자의 부재로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사례, 곰팡이 핀 음식 등 적절하지 않은 식사를 제공한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표 4-17]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재가	265	78.2	186	84.2	92	82.9	233	77.2	23	71.9	100	43.7	899	72.9
시설	74	21.8	35	15.8	19	17.1	69	22.8	9	28.1	129	56.3	335	27.1
계	339	100.0	221	100.0	111	100.0	302	100.0	32	100.0	229	100.0	1,234	100.0

5) 장애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장애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를 보면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38.9%(480건)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32.8%(405건), 타인에 의한 학대가 27.9%(344건),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0.4%(5건)이었다.

신체적 학대의 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모에 의한 학대가 21.5%(73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10.0%(34건)이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경우는 기관종사자로 특히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17.7%(60건)로 높았다.

정서적 학대의 행위자는 기관종사자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인 경우가 17.2%(38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인 경우가 10.9%(24건) 순이었다. 그 다음으로 가족 및 친인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부모에 의한 정서적 학대는 16.3%(36건)이었다.

성적 학대의 행위자는 타인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중 지인이 22.5%(25건), 이웃이 12.6%(14건)이었다. 그 다음으로 기관종사자인 경우가 많았는데 그 중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는 15.3%(17건) 이었으며 가족 및 친인척 중에서는 부모가 10.8%(12건)이었다.

경제적 착취 역시 타인이 학대행위자인 경우가 많았으며 고용주에 의한 경제적 착취는 16.6%(50건), 지인 14.2%(43건) 순이었다. 그 다음으로 기관종사자가 많았고 그 중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인 경우가 14.9%(45건), 가족 및 친인척 중에서는 형제자매가 11.3%(34건)로 가장 많았다.

유기는 가족 및 친인척이, 방임은 기관종사자가 행위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4-18] 장애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34	10.0	18	8.1	4	3.6	9	3.0	6	18.8	13	5.7	84	6.8
	부모	73	21.5	36	16.3	12	10.8	11	3.6	11	34.4	34	14.8	177	14.3
	조부모	6	1.8	6	2.7	–	–	–	–	–	–	–	–	12	1.0
	자녀	5	1.5	4	1.8	–	–	3	1.0	3	9.4	2	0.9	17	1.4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1	6.2	4	1.8	5	4.5	34	11.3	1	3.1	8	3.5	73	5.9
	그외 친척	7	2.1	5	2.3	7	6.3	18	6.0	1	3.1	4	1.7	42	3.4
	소계	146	43.1	73	33.0	28	25.2	75	24.8	22	68.8	61	26.6	405	32.8
타인	동거인	11	3.2	13	5.9	3	2.7	13	4.3	1	3.1	3	1.3	44	3.6
	이웃	9	2.7	6	2.7	14	12.6	25	8.3	–	–	1	0.4	55	4.5
	지인	32	9.4	21	9.5	25	22.5	43	14.2	–	–	2	0.9	123	10.0
	고용주	9	2.7	10	4.5	3	2.7	50	16.6	–	–	3	1.3	75	6.1
	모르는 사람	7	2.1	6	2.7	12	10.8	22	7.3	–	–	–	–	47	3.8
	소계	68	20.1	56	25.3	57	51.4	153	50.7	1	3.1	9	3.9	344	27.9
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22	6.5	15	6.8	2	1.8	–	–	1	3.1	3	1.3	43	3.5
	의료기관 종사자	3	0.9	1	0.5	–	–	–	–	–	–	2	0.9	6	0.5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60	17.7	24	10.9	17	15.3	45	14.9	1	3.1	120	52.4	267	21.6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29	8.6	38	17.2	5	4.5	4	1.3	–	–	25	10.9	101	8.2
	그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9	2.7	14	6.3	1	0.9	24	7.9	7	21.9	8	3.5	63	5.1
	소계	123	36.3	92	41.6	25	22.5	73	24.2	9	28.1	158	69.0	480	38.9
파악안됨		2	0.6	–	–	1	0.9	1	0.3	–	–	1	0.4	5	0.4
계		339	100.0	221	100.0	111	100.0	302	100.0	32	100.0	229	100.0	1,234	100.0

다.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발생장소에 따른 장애인학대 유형을 보면 피해장애인의 거주지에서는 신체적 학대(33.3%)와 경제적 착취(24.8%)가 주로 발생했고, 학대행위자의 거주지에서는 경제적 착취(32.7%)와 신체적 학대(28.6%)가 높았다. 직장 및 일터에서는 경제적 착취(44.5%)와 정서적 학대(27.7%)가 많았고, 교육기관에서는 신체적 학대(54.5%), 정서적 학대(36.4%)가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방임(46.5%)과 신체적 학대(21.5%)가 높았고, 장애인이용시설에서는 방임(34.7%)과 정서적 학대(28.0%)가,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에서는 경제적 착취(33.9%)와 정서적 학대(22.6%)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피해장애인의 거주지	149	33.3	79	17.6	47	10.5	111	24.8	15	3.3	47	10.5	448	100.0
학대행위자의 거주지	28	28.6	12	12.2	12	12.2	32	32.7	2	2.0	12	12.2	98	100.0
직장 및 일터	22	16.1	38	27.7	13	9.5	61	44.5	–	–	3	2.2	137	100.0
교육기관	30	54.5	20	36.4	2	3.6	–	–	1	1.8	2	3.6	55	100.0
의료기관	10	38.5	2	7.7	–	–	3	11.5	3	11.5	8	30.8	26	100.0
장애인 거주시설	55	21.5	26	10.2	19	7.4	37	14.5	–	–	119	46.5	256	100.0
장애인 이용시설	19	25.3	21	28.0	6	8.0	3	4.0	–	–	26	34.7	75	100.0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	11	17.7	14	22.6	1	1.6	21	33.9	7	11.3	8	12.9	62	100.0
종교시설	2	25.0	1	12.5	1	12.5	4	50.0	–	–	–	–	8	100.0
기타	10	16.4	8	13.1	9	14.8	29	47.5	3	4.9	2	3.3	61	100.0
파악안됨	3	37.5	–	–	1	12.5	1	12.5	1	12.5	2	25.0	8	100.0
계	339	27.5	221	17.9	111	9.0	302	24.5	32	2.6	229	18.6	1,234	100.0

4.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신고가 접수되면 학대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학대여부를 판정한 뒤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안전한 곳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거나 의료적 치료를 진행한다. 이후 피해장애인이 학대의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지원을 실시하고 학대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사례를 종결한다.

가. 응급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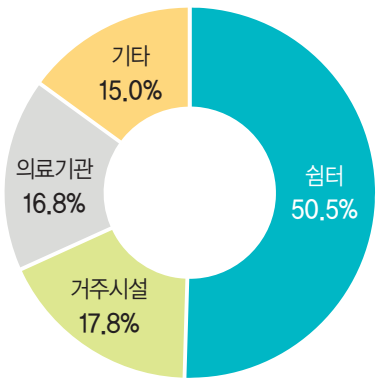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에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하여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응급조치 시 피해장애인을 의료기관에 인도하거나 피해장애인 쉼터 등에 연계하여 보호한다.

[표 4-20] 응급조치

(단위: 건, %)

쉼터	거주시설	의료기관	기타	계
54	19	18	16	107
50.5	17.8	16.8	15.0	100.0

[그림 4-14] 응급조치



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나 성폭력 및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노인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및 아동쉼터,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노숙인복지지원법에 따른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등을 말한다. 현재 피해장애인 쉼터가 전국적으로 부족하여 피해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거주시설이나 피해장애인의 가족, 친인척의 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립홈 및 체험홈과 같은 기타의 장소에서 피해장애인을 보호한다.

2018년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889건 중 응급조치는 107건 실시되었으며 쉼터를 이용한 경우가 54건(50.5%), 거주시설이 19건(17.8%), 의료기관이 18건(16.8%), 기타가 16건(15.0%)이었다.

쉼터로 응급조치된 54건 중 2018년에 종결된 24건의 피해장애인은 원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지역사회에 자립한 사례가 13건, 쉼터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사례가 3건,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사례가 7건, 기타 사례가 1건이었다. 피해장애인이 미성년이거나 고령의 노인인 경우, 그리고 지역 내 자립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 경우에 주로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였다.

나. 피해장애인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피해장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기타 6개 영역에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피해장애인의 상황에 따라 한 가지 영역 또는 다양한 영역의 지원을 실시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실시하는 의료지원은 학대로 인한 질환 등에 대하여 의료적 지원을 실시하여 피해 회복을 돕는 것을 말하며 통원 치료나 검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심리지원은 피해장애인의 심리 · 정서적 회복을 위하여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심리진단, 심리상담,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거주지원은 피해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실시되는 지원으로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신청 등이 그 예이다. 사법지원은 학대행위자의 형사처벌, 학대로 인하여 피해장애인이 입게 된 손해의 회복, 학대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견인 선임 등 사법절차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 복지지원은 장애인 등록,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서비스(기초생활수급비 등), 활동지원서비스, 취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지원은 피해장애인과 학대행위자 간의 중재나 교육 연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감사나 행정처분 요구, 사례지원과 관련된 상담 등을 말한다.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889건 중 2018년 피해자 지원을 실시한 759건의 사례에 대해 총 1,201건의 피해자 지원이 이뤄졌다. 피해자 지원 유형별로 보면 기타 지원이 42.5%(511건)로 가장 많이 이뤄졌고, 사법지원이 23.5%(282건) 이뤄졌다. 복지지원은 10.2%(122건)가 이뤄졌으며 거주지원은 10.0%(120건) 이뤄졌다.

피해자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130건의 사례는 주로 피해장애인이 지원을 거부하거나 타 기관에서 이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는 경우였으며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피해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이 전혀 없어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표 4-21]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단위: 건, %)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기타	계
58	108	120	282	122	511	1,201
4.8	9.0	10.0	23.5	10.2	42.5	100.0

사법지원은 고발 및 수사의뢰, 후견인 선임,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소송구조, 기타로 나뉘며 사례에 따라 중복으로 지원하고 있다. 고발 및 수사의뢰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명의로 행위자를 고발하거나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견인 선임은 피해장애인을 위해 후견인을 직접 선임하거나 선임 절차를 연계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은 학대사건에 관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거나 진행 중인 사건에 피해장애인과 동행, 동석하면서 사건을 지원하고, 필요시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구조는 피해장애인을 대리하여 직접 고소를 하거나 민사 ·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 또는 소송구조기관에 연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법지원을 실시한 420건 중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을 한 경우가 42.4%(178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발 및 수사의뢰가 40%(168건)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로 판정한 사례에서 행위자처벌을 위한 고발 및 수사의뢰,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표 4-22] 피해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건수

(단위: 건, %)

고발 및 수사의뢰	후견인 선임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소송구조	기타	계
168	23	178	31	20	420
40.0	5.5	42.4	7.4	4.8	100.0

*중복지원포함

다. 지역별 상담 및 지원

2018년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889건에 대해 총 11,083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학대사례 1건당 12.5회 지원을 한 것이다. 전남의 경우 사례 1건당 평균 24.2회를 지원했고, 광주는 평균 20.1회, 세종과 경기는 각각 평균 17.1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지역별 상담 및 지원

(단위: 건, 회)

구분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횟수
서울	51	848	16.6
부산	67	660	9.9
대구	24	243	10.1
인천	42	351	8.4
광주	51	1,023	20.1
대전	33	361	10.9
울산	31	510	16.5
세종	10	171	17.1
경기	83	1,423	17.1
강원	45	708	15.7
충북	49	597	12.2
충남	37	313	8.5
전북	91	942	10.4
전남	36	872	24.2
경북	144	1,400	9.7
경남	68	562	8.3
제주	27	99	3.7
계	889	11,083	12.5

라. 사례종결

2018년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889건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 종결한 사례는 546건으로 당해연도 사례종결율은 61.4%로 나타났다. 2018년에 접수된 사례 10건 중 약 4건은 2019년에도 피해자지원 등 계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접수된 사례가 종결되지 않고 장기적인 개입이 이뤄지는 이유는 우선,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많아 피해자지원 시 당사자의 욕구파악을 위한 관계형성 및 의사소통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외에도 형사절차 지원,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다양한 자원 연계 및 지지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 4-24] 사례종결

(단위: 건, %)

학대사례	종결사례	당해연도 사례종결율
889	546	61.4

마. 사후 모니터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피해자 지원이 끝난 이후 일정기간 동안 피해장애인의 안전과 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모니터링 절차를 거치고 있다. 최소 1회 이상, 6개월 동안 피해장애인을 직접 만나거나 피해장애인과 전화통화 등으로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후 모니터링 기간은 피해장애인의 상황에 따라 길어질 수 있고, 피해장애인의 거주지 변경, 행위자 수감 등 학대 재발 위험이 줄어들었을 때에는 단축될 수 있다. 사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할 때 피해장애인이 더 이상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경우나 피해장애인이 사망 및 수감, 국외이주한 경우, 타 지역으로 사례가 이관된 경우에는 모니터링이 불가능하여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다.

2018년 종결된 사례 546건 중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는 249건으로 실시 비율은 45.6%로 나타났다.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한 249건에 대해 총 820회의 사후 모니터링이 이뤄져 1건의 사례 당 약 3.2회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다.

[표 4-25] 사후 모니터링

(단위: 건, %, 회)

사후 모니터링 실시 사례	당해연도 사후 모니터링 실시 비율	사후 모니터링 실시 횟수
249	45.6	820



보건복지부
www.mohw.go.kr

5

특성별 장애인학대사례 분석 결과

1.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2.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례
3.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사례

제5장

특성별 장애인학대사례 분석 결과

본 장은 장애인학대사례를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장애인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등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사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사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발달장애인 학대사례는 2018년 전체 학대사례의 70.4%(626건) [5]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발달장애인이 전체 장애유형 중 특히 학대 고위험군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2014년 5월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그리고 그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2,585,876명이며, 이 중 발달장애인은 233,62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연 3.6%)이다.

5) 본 장에서는 학대피해 장애인의 주장애 또는 부장애가 발달장애인인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다. 주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 587건(66.0%), 지체장애 61건(6.9%), 정신장애 50건(5.6%), 뇌병변장애 46건(5.2%) 등의 순이며, 자폐성장애는 22건(2.5%)로 나타났다. 부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 17건, 뇌병장애 14건, 지체장애 13건, 언어장애 12건 등의 순이었다.

가. 지역별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북이 121건(19.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전북 66건(10.5%), 경기 56건(8.9%), 경남 47건(7.5%), 부산 42건(6.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인이 9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5-1] 지역별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단위: 건, %)

구분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서울	34	5.6	3	13.6	37	5.9
부산	37	6.1	5	22.7	42	6.7
대구	8	1.3	1	4.5	9	1.4
인천	20	3.3	2	9.1	22	3.5
광주	37	6.1	–	–	37	5.9
대전	20	3.3	2	9.1	22	3.5
울산	14	2.3	–	–	14	2.2
세종	8	1.3	1	4.5	9	1.4
경기	51	10.0	5	22.7	56	8.9
강원	37	6.1	–	–	37	5.9
충북	34	5.6	–	–	34	5.4
충남	31	5.1	–	–	31	5.0
전북	65	10.8	1	4.5	66	10.5
전남	25	4.1	–	–	25	4.0
경북	119	19.7	2	9.1	121	19.3
경남	47	7.8	–	–	47	7.5
제주	16	2.6	–	–	16	2.6
계	604	100.0	22	100.0	626	100.0

나.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자 유형

발달장애인 학대의 신고자 유형을 보면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44.9%(281건)이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19.8%(124건)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7.9%(112건) 순이었다.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55.1%(345건)이었으며, 세부적으로는 기관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35.3%(221건)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가족 및 친인척 9.9%(62건), 타인 7.0%(44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대피해자인 발달장애인이 학대를 인지하여 스스로 신고한 경우는 2.9%(18건)로 매우 낮았다. 이는 전체 학대의심사례의 피해장애인 본인에 의한 신고율 10.6%와 비교하여 3.7배 낮은 수치로, 발달장애인이 상대적으로 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학대 예방과 신고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홍보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표 5-2]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율
신고의무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24	19.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12	17.9
	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16	2.6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1	0.2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1	0.2
	초 · 중 · 고 교직원	12	1.9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8	1.3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4	0.6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1	0.2
	장기요양요원	2	0.3
	소계	281	44.9
비신고의무자	피해당사자	18	2.9
	가족 및 친인척	62	9.9
	기관종사자	221	35.3
	타인	44	7.0
	소계	345	55.1
계		626	100.0

다.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1)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및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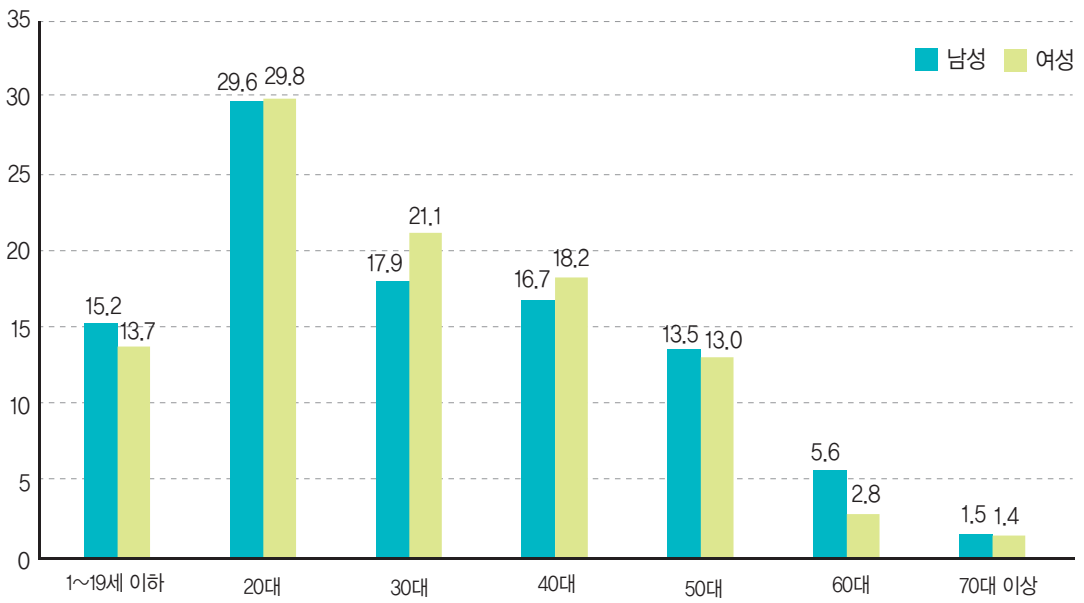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341건(54.5%), 여성이 285건(45.5%)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9.0%p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186건(29.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 121건(19.3%), 40대 109건(17.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학대 피해장애인의 성별 및 연령 분포와 비교해 큰 차이는 없다.

[표 5-3]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및 연령

(단위: 건, %)

구분	1~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남성	52	15.2	101	29.6	61	17.9	57	16.7	46	13.5	19	5.6	5	1.5	341	100.0
여성	39	13.7	85	29.8	60	21.1	52	18.2	37	13.0	8	2.8	4	1.4	285	100.0
계	91	14.5	186	29.7	121	19.3	109	17.4	83	13.3	27	4.3	9	1.4	626	100.0

[그림 5-1]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및 연령



2)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거주유형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의 거주유형은 재가가 434건(69.3%)이었으며, 사회복지시설, 정신병원, 요양원 등 다수가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관리자가 있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192건(30.7%)으로 나타났다.

[표 5-4]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거주유형

(단위: 건, %)

재가		시설		계	
434	69.3	192	30.7	626	100.0

3)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의 54.6%(342건)이며, 차상위수급자는 3.0%(19건), 비수급자는 42.3%(265건)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학대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전체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인 51.7% 보다 약 2.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단위: 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	비수급자	계
342	19	265	626
54.6	3.0	42.3	100.0

라.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1)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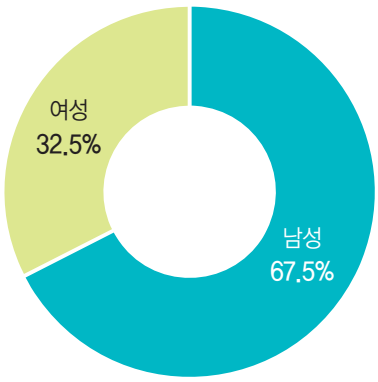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성별은 남성이 414건(67.5%), 여성은 209건(32.5%)으로 남성인 학대행위자가 여성에 비해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표 5-6]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건, %)

남성		여성		계	
414	67.5	209	32.5	623	100.0

[그림 5-2]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성별



2)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를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에 의해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28.1%(176건)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부모 13.6%(85건),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10.2%(64건), 지인 8.8%(55건), 고용주 6.1%(38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를 크게 보면 학대가 기관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44.4%(278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발달장애인 학대 10건 중 4건 이상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복지기관 및 교육기관의 종사자에 의해 발생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하는 사례(28.1%)가 가족 및 친인척 전체에서 발생하는 사례(27.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에 의한 장애인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장애인권교육이나 인식개선교육 뿐만 아니라 시설거주인의 자립지원과 거주시설의 소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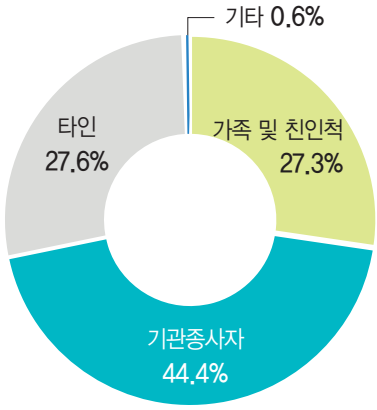
화 등을 통한 거주 여건 개선, 종사자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등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의 행위자는 부모(13.6%),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4.5%), 그 외 친척(4.2%) 순으로 나타났다.

[표 5-7]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율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24	3.8
	부모	85	13.6
	조부모	4	0.6
	자녀	4	0.6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28	4.5
	그 외 친척	26	4.2
	소계	171	27.3
타인	동거인	16	2.6
	이웃	36	5.8
	지인	55	8.8
	고용주	38	6.1
	모르는사람	28	4.5
	소계	173	27.6
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20	3.2
	장애인거주시설	176	28.1
	장애인이용시설	64	10.2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	18	2.9
	소계	278	44.4
기타		4	0.6
계		626	100.0

[그림 5-3]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대분류)



마.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장소

발달장애인 학대의 발생장소를 보면 피해장애인의 거주지에서 발생한 사례가 32.7%(205건)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거주시설 26.8%(168건), 직장 및 일터 11.7%(73건), 학대행위자의 거주지 8.1%(5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장애인학대 발생 장소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비율은 6%p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8]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장소

(단위: 건, %)

발생장소		건수	비율
피해장애인의 거주지		205	32.7
학대행위자의 거주지		51	8.1
직장 및 일터		73	11.7
교육기관		21	3.4
의료기관		3	0.5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168	26.8
	장애인이용시설	42	6.7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		16	2.6
종교시설		5	0.8
기타		40	6.4
파악 안 됨		2	0.3
계		626	100.0

바.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1)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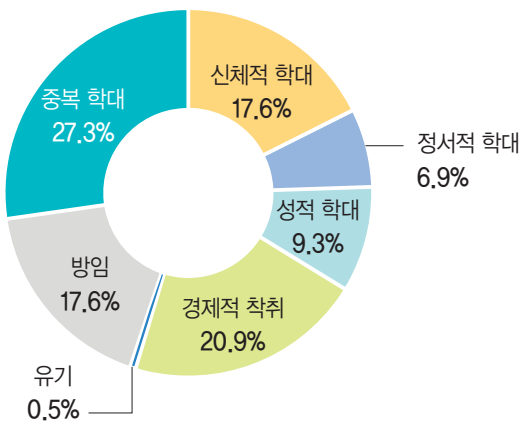
발달장애인의 학대유형을 보면 중복 학대가 27.3%(17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제적 착취 20.9%(131건), 신체적 학대 17.6%(110건), 방임 17.6%(110건), 성적 학대 9.3%(58건), 정서적 학대 6.9%(43건), 유기 0.5%(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학대 유형과 비교하면 발달장애인 학대유형도 동일하게 중복 학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제적 착취, 신체적 학대 · 방임 순이었다.

[표 5-9]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건, %)

학대유형	건수	비율
신체적 학대	110	17.6
정서적 학대	43	6.9
성적 학대	58	9.3
경제적 착취	131	20.9
유기	3	0.5
방임	110	17.6
중복 학대	171	27.3
계	626	100.0

[그림 5-4]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2) 발달장애인 학대유형II(중복 학대 미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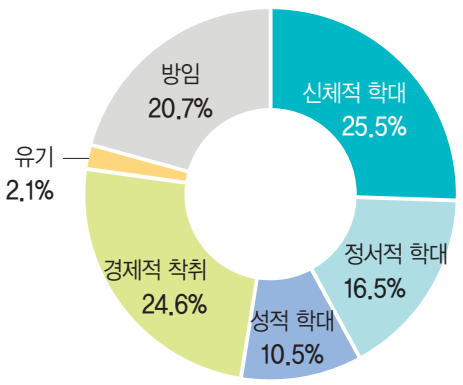
발달장애인 학대 총 626건 중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이 중복해서 경험한 학대를 각각 하나의 유형별로 보면 총 854건이었다. 신체적 학대가 25.5%(218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착취 24.6%(210건), 방임 20.7%(177건), 정서적 학대 16.5%(141건), 성적 학대 10.5%(90건), 유기 2.1%(18건) 순이었다. 이는 전체 장애인학대 유형과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표 5-10] 발달장애인 학대유형II(중복 학대 미분류)

(단위: 건, %)

학대유형	건수	비율
신체적 학대	218	25.5
정서적 학대	141	16.5
성적 학대	90	10.5
경제적 착취	210	24.6
유기	18	2.1
방임	177	20.7
계	854	100.0

[그림 5-5] 발달장애인 학대유형II(중복 학대 미분류)



사. 발달장애인 학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1)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의 성별을 보면 성적 학대를 제외하고 모든 학대유형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특히 경제적 착취, 유기 및 방임의 경우 남성이 여성의 약 2배 정도 많았으며, 성적 학대의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 4.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남성	116	53.2	73	51.8	16	17.8	139	66.2	12	66.7	111	62.7	467	54.7
여성	102	46.8	68	48.2	74	82.2	71	33.8	6	33.3	66	37.3	387	45.3
계	218	100.0	141	100.0	90	100.0	210	100.0	18	100.0	177	100.0	854	100.0

2)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연령

학대유형별로 피해 발달장애인의 연령을 보면 20대가 거의 모든 학대유형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겪고 있었으며, 경제적 착취는 40대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학대는 주로 20대~40대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전체 학대피해 장애인의 연령 현황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다만 20대의 경우 발달장애인 학대피해자가 7.3%p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2~3%p 낮게 나타났다.

[표 5-12]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연령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1~19세 이하	54	24.8	26	18.4	13	14.4	7	3.3	3	16.7	17	9.6	120	14.1
20대	69	31.7	52	36.9	35	38.9	52	24.8	9	50.0	48	27.1	265	31.0
30대	33	15.1	26	18.4	24	26.7	33	15.7	1	5.6	37	20.9	154	18.0
40대	32	14.7	19	13.5	7	7.8	53	25.2	4	22.2	34	19.2	149	17.4
50대	22	10.1	15	10.6	8	8.9	42	20.0	1	5.6	28	15.8	116	13.6
60대	6	2.8	2	1.4	3	3.3	17	8.1	–	–	10	5.6	38	4.4
70대 이상	2	0.9	1	0.7	–	–	6	2.9	–	–	3	1.7	12	1.4
계	218	100.0	141	100.0	90	100.0	210	100.0	18	100.0	177	100.0	854	100.0

3)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피해 발달장애인과 학대행위자와의 관계를 보면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44.4%(379건)로 가장 많았고, 가족 및 친인척 30.0%(256건), 타인 25.2%(215건), 기타 0.5%(4건) 순이었다.

학대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의 경우에는 학대행위자가 가족 및 친인척인 경우가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보다 조금 많았으며, 학대행위자 단독유형으로 볼 때 부모에 의한 학대가 25.2%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22.5%로 그 뒤를 이었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는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았으며, 학대행위자 단독유형으로 볼 때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가 23.4%, 부모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각각 16.3%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의 경우에는 타인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았다. 학대행위자 단독유형으로 볼 때 성적 학대는 지인이 16.7%, 이웃과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각각 15.6% 순으로 많았으며, 경제적 착취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17.6%, 고용주 15.7%, 지인 14.3% 순으로 나타났다.

유기의 경우 가족 및 친인척이 행위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중에서도 부모가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방임의 경우 기관종사자가 행위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중에서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13]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15	6.9	7	5.0	3	3.3	5	2.4	2	11.1	6	3.4	38	4.4
	부모	55	25.2	23	16.3	11	12.2	7	3.3	7	38.9	25	14.1	128	15.0
	조부모	4	1.8	3	2.1	–	–	–	–	–	–	–	–	7	0.8
	자녀	4	1.8	1	0.7	–	–	–	–	1	5.6	1	0.6	7	0.8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	9	4.1	3	2.1	5	5.6	20	9.5	–	–	4	2.3	41	4.8
	그 외 친척	6	2.8	4	2.8	6	6.7	16	7.6	–	–	3	1.7	35	4.1
	소계	93	42.7	41	29.1	25	27.8	48	22.9	10	55.6	39	22.0	256	30.0
타인	동거인	6	2.8	9	6.4	2	2.2	7	3.3	–	–	–	–	24	2.8
	이웃	5	2.3	4	2.8	14	15.6	21	10.0	–	–	1	0.6	45	5.3
	지인	15	6.9	6	4.3	15	16.7	30	14.3	–	–	–	–	66	7.7
	고용주	3	1.4	7	5.0	2	2.2	33	15.7	–	–	3	1.7	48	5.6
	모르는 사람	3	1.4	2	1.4	10	11.1	17	8.1	–	–	–	–	32	3.7
	소계	32	14.7	28	19.9	43	47.8	108	51.4	–	–	4	2.3	215	25.2
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13	6.0	7	5.0	2	2.2	–	–	1	5.6	3	1.7	26	3.0
	장애인 거주시설	49	22.5	23	16.3	14	15.6	37	17.6	1	5.6	103	58.2	227	26.6
	장애인 이용시설	25	11.5	33	23.4	5	5.6	3	1.4	–	–	21	11.9	87	10.2
	그 외 사회복지 관련 시설	4	1.8	9	6.4	–	–	14	6.7	6	33.3	6	3.4	39	4.6
	소계	91	41.7	72	51.1	21	23.3	54	25.7	8	44.4	133	75.1	379	44.4
기타		2	0.9	–	–	1	1.1	–	–	–	–	1	0.6	4	0.5
계		218	100.0	141	100.0	90	100.0	210	100.0	18	100.0	177	100.0	854	100.0

아. 발달장애인 학대 조치

1) 발달장애인 학대 응급조치

발달장애인 학대 총 626건 중에서 응급조치를 한 경우는 12.6%(79건)이었다. 그 중 쉼터를 51.9%(41건)로 가장 많이 이용했으며, 다음으로 장애인거주시설 20.3%(16건), 기타 19.0%(15건), 의료기관 8.9%(7건)로 응급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의 39.3%는 이용 가능한 피해장애인 쉼터가 부족해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친인척의 집 등에서 일시보호를 받았다.

[표 5-14] 발달장애인 학대 응급조치

(단위: 건, %)

쉼터	거주시설	의료기관	기타	합계
41	16	7	15	79
51.9	20.3	8.9	19.0	100.0

2) 발달장애인 학대 사법지원

발달장애인 학대에서 지원한 사법지원은 고발 및 수사의뢰가 42.9%(129건)로 가장 많았으며,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42.2%(127건), 후견인 선임 7.3%(22건)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학대와 비교하면 고발 및 수사의뢰 비율이 2.9%p, 후견인 선임은 1.8%p 높았다.

[표 5-15] 발달장애인 학대 사법지원 유형 건수

(단위: 건, %)

고발 및 수사의뢰	후견인 선임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소송구조	기타	합계
129	22	127	14	9	301
42.9	7.3	42.2	4.7	3.0	100.0

*중복지원포함

2.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사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장애인학대로 판단한 사례 중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시설, 교육기관 등 다수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례로 미신고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사례도 이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1) 전체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집단이용시설 학대는 2018년 전체 장애인학대의 35.2%(313건)이었다. 장애인거주시설이 62.3%(195건)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이용시설 16.0%(50건), 교육기관 12.1%(38건),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 9.6%(30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12월 기준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거주시설은 1,517개이며 이곳에 총 30,693명이 거주하고 있다.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관 등)은 1,333개, 의료재활시설은 19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625개에 총 17,841명이 이용하고 있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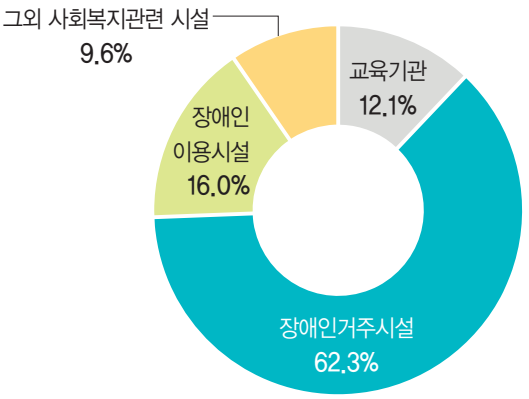
[표 5-16] 전체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단위: 건, %)

시설유형	건수	비율
교육기관	38	12.1
장애인거주시설	195	62.3
장애인이용시설	50	16.0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	30	9.6
계	313	100.0

6) 2018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장애인 복지시설별 현황 참고

[그림 5-6] 전체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2) 지역별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26.2%(8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북 20.1%(63건), 경기 10.5%(33건), 서울 7.3%(23건) 순이었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사례는 지역별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2018년 4월 기준, 전국의 특수학교는 175개이며 경기도가 35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30개), 부산광역시(15개), 전라북도 · 충청북도(10개) 등의 순이다. 특수학급은 10,676개가 설치 · 운영되어 있으며 경기도가 2,842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1,311개), 경상남도(778개), 충청남도(662개) 순이다.[7)]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경북이 가장 많았다. 2017년 12월 현재, 거주시설 수와 거주장애인 수는 경기도(314개, 6,289명)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270개, 3,819명), 경상남도(95개, 1,930명), 경상북도(88개, 2,567명) 등의 순이다.

장애인이용시설 학대는 전북,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 학대는 제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2월 현재,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경기도가 222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203개), 경상북도(120개), 경상남도(101개) 순이다.

7) 2018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참조

[표 5-17] 지역별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단위: 건, %)

구분	교육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그 외 사회복지 관련 시설		계	
서울	5	1.6	11	3.5	7	2.2	–	–	23	7.3
부산	5	1.6	3	1.0	2	0.6	–	–	10	3.2
대구	2	0.6	2	0.6	–	–	–	–	4	1.3
인천	5	1.6	2	0.6	2	0.6	3	1.0	12	3.8
광주	–	–	10	3.2	2	0.6	–	–	12	3.8
대전	1	0.3	11	3.5	1	0.3	–	–	13	4.2
울산	–	–	–	–	1	0.3	–	–	1	0.3
세종	1	0.3	–	–	1	0.3	–	–	2	0.6
경기	2	0.6	26	8.3	5	1.6	–	–	33	10.5
강원	3	1.0	1	0.3	–	–	1	0.3	5	1.6
충북	6	1.9	1	0.3	1	0.3	7	2.2	15	4.8
충남	–	–	1	0.3	2	0.6	1	0.3	4	1.3
전북	4	1.3	35	11.2	24	7.7	–	–	63	20.1
전남	1	0.3	4	1.3	1	0.3	2	0.6	8	2.6
경북	1	0.3	78	24.9	1	0.3	2	0.6	82	26.2
경남	2	0.6	10	3.2	–	–	1	0.3	13	4.2
제주	–	–	–	–	–	–	13	4.2	13	4.2
계	38	12.1	195	62.3	50	16.0	30	9.6	313	100.0

나.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의 피해장애인

1)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의 피해장애인 성별을 보면 남성이 63.3%(198건), 여성이 36.7%(115건)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1.7배 더 많았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모든 유형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육기관의 경우는 남성이 5.3배 많았다.

[표 5-18]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단위: 건, %)

구분	교육기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이용시설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		계	
남성	32	10.2	115	36.7	33	10.5	18	5.8	198	63.3
여성	6	1.9	80	25.6	17	5.4	12	3.8	115	36.7
계	38	12.1	195	62.3	50	16.0	30	9.6	313	100.0

2)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의 피해장애인 연령을 보면 20대가 27.8%(8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 19.5%(61건), 1~19세 이하 18.2%(57건), 40대 15.7%(4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기관의 경우 학령기인 1~19세 이하가 가장 많았다.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2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 4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용시설의 경우 2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 1~19세 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경우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9]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단위: 건, %)

구분	교육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		계	
1~19세 이하	33	10.5	11	3.5	10	3.2	3	1.0	57	18.2
20대	5	1.6	52	16.6	21	6.7	9	2.9	87	27.8
30대	–	–	45	14.4	12	3.8	4	1.3	61	19.5
40대	–	–	36	11.5	6	1.9	7	2.2	49	15.7
50대	–	–	36	11.5	1	0.3	6	1.9	43	13.7
60대	–	–	7	2.2	–	–	1	0.3	8	2.6
70대 이상	–	–	8	2.6	–	–	–	–	8	2.6
계	38	12.1	195	62.3	50	16.0	30	9.6	313	100.0

3)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집단이용시설의 피해장애인 장애유형은 주장애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지적장애가 72.2%(22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뇌병변장애 8.0%(25건), 정신장애 4.5%(1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모든 시설유형에서 지적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20]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단위: 건, %)

구분	교육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		계	
지체	1	0.3	7	2.2	1	0.3	3	1.0	12	3.8
뇌병변	7	2.2	12	3.8	6	2.0	–	–	25	8.0
시각	–	–	3	1.0	–	–	–	–	3	1.0
청각	1	0.3	–	–	1	0.3	–	–	2	0.6
언어	4	1.3	–	–	–	–	1	0.3	5	1.6
지적	15	4.8	161	51.4	35	11.2	15	4.8	226	72.2
자폐성	6	2.0	2	0.6	4	1.3	1	0.3	13	4.2
정신	–	–	4	1.3	2	0.6	8	2.6	14	4.5
미등록	4	1.3	6	1.9	1	0.3	2	0.6	13	4.2
계	38	12.1	195	62.3	50	16.0	30	9.6	313	100.0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중 피해장애인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총 300건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97.7%(293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2.3%(7건)로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표 5-21]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피해장애인 장애정도

(단위: 건, %)

구분	교육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		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3급)	30	10.0	189	63.0	48	16.0	26	8.7	293	97.7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4급~6급)	4	1.3	–	–	1	0.3	2	0.7	7	2.3
계	34	11.3	189	63.0	49	16.3	28	9.3	300	100.0

다.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신고자 유형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신고자 유형을 보면 신고의무자가 37.1%(116건), 비신고의무자가 62.9%(197건)로 비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자보다 약 1.7배 더 많았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모든 시설에서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많았지만, 장애인이용시설의 경우는 신고의무자(12.8%)가 비신고의무자(3.2%)보다 높은 신고 비율을 보였다.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학대의 경우 비신고의무자인 가족 및 친인척(6.7%)에 의한 신고가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비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40.2%), 신고의무자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12.5%) 순으로 신고율이 높았다. 장애인이용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한 경우 신고의무자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1.5%)에 의한 신고가 가장 많았고,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의 경우 비신고의무자 중 기관종사자(5.8%)에 의한 신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22]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구분		교육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		계	
신고의무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	–	39	12.5	3	1.0	3	1.0	45	14.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	0.6	21	6.7	36	11.5	7	2.2	66	21.1
	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3	1.0	–	–	1	0.3	–	–	1	0.3
	초 · 중 · 고 교직원	3	1.0	1	0.3	–	–	–	–	4	1.3
	소계	5	1.6	61	19.5	40	12.8	10	3.2	116	37.1
비신고의무자	피해당사자	1	0.3	1	0.3	–	–	1	0.3	3	1.0
	가족 및 친인척	21	6.7	3	1.0	2	0.6	1	0.3	27	8.6
	기관종사자	10	3.2	126	40.2	4	1.3	18	5.8	158	50.5
	타인	1	0.3	4	1.3	4	1.0	–	–	9	2.9
	소계	33	10.5	134	42.8	10	3.2	20	6.4	197	62.9
계		38	12.1	195	62.3	50	16.0	30	9.6	313	100.0

라.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1)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집단이용시설의 장애인학대 유형을 보면 중복 학대가 33.2%(10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방임 32.3%(101건), 신체적 학대 20.4%(64건), 경제적 착취 5.4%(17건), 정서적 학대 5.1%(16건), 성적 학대 3.5%(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장애인학대 유형에서 보이고 있는 중복 학대–경제적 착취–신체적 학대–방임–정서적 학대–성적 학대–유기 순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방임(32.3%)은 전체 장애인학대 유형의 방임(14.6%)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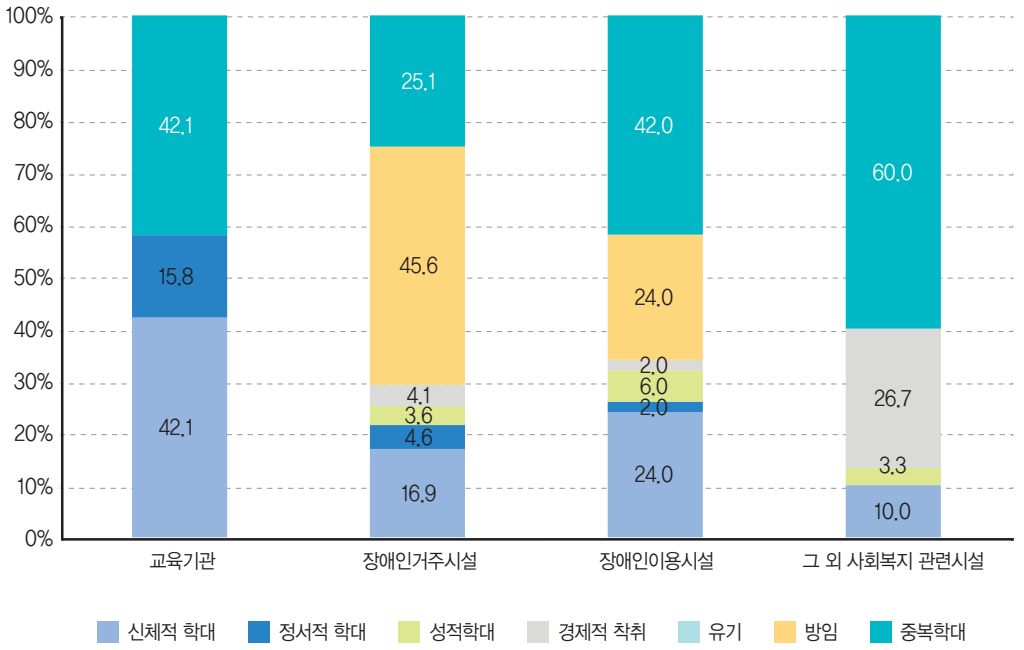
집단이용시설의 학대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육기관의 경우 중복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각각 42.1%(16건)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방임 45.6%(89건), 중복 학대가 25.1%(49건), 신체적 학대 16.9%(33건) 순으로 높았다. 또 장애인이용시설은 중복 학대 42.0%(21건), 신체적 학대와 방임이 각 24.0%(12건) 순이었으며,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은 중복 학대 60.0%(18건), 경제적 착취 26.7%(8건) 순으로 높았다

[표 5–23]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건, %)

구분	교육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		계	
신체적 학대	16	42.1	33	16.9	12	24.0	3	10.0	64	20.4
정서적 학대	6	15.8	9	4.6	1	2.0	–	–	16	5.1
성적 학대	–	–	7	3.6	3	6.0	1	3.3	11	3.5
경제적 착취	–	–	8	4.1	1	2.0	8	26.7	17	5.4
유기	–	–	–	–	–	–	–	–	–	–
방임	–		89	45.6	12	24.0	–	–	101	32.3
중복 학대	16	42.1	49	25.1	21	42.0	18	60.0	104	33.2
계	38	100.0	195	100.0	50	100.0	30	100.0	313	100.0

[그림 5-7]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2)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II(중복 학대 미분류)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총 313건 중 학대피해 장애인이 중복하여 경험한 학대를 각각 하나의 유형으로 보면 총 448건이다. 방임이 34.6%(155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25.7%(115건), 정서적 학대 18.1%(81건), 경제적 착취 13.6%(61건), 성적 학대 6.3%(28건), 유기 1.8%(8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학대 유형과 비교해 두드러진 특징 역시 방임(18.6%)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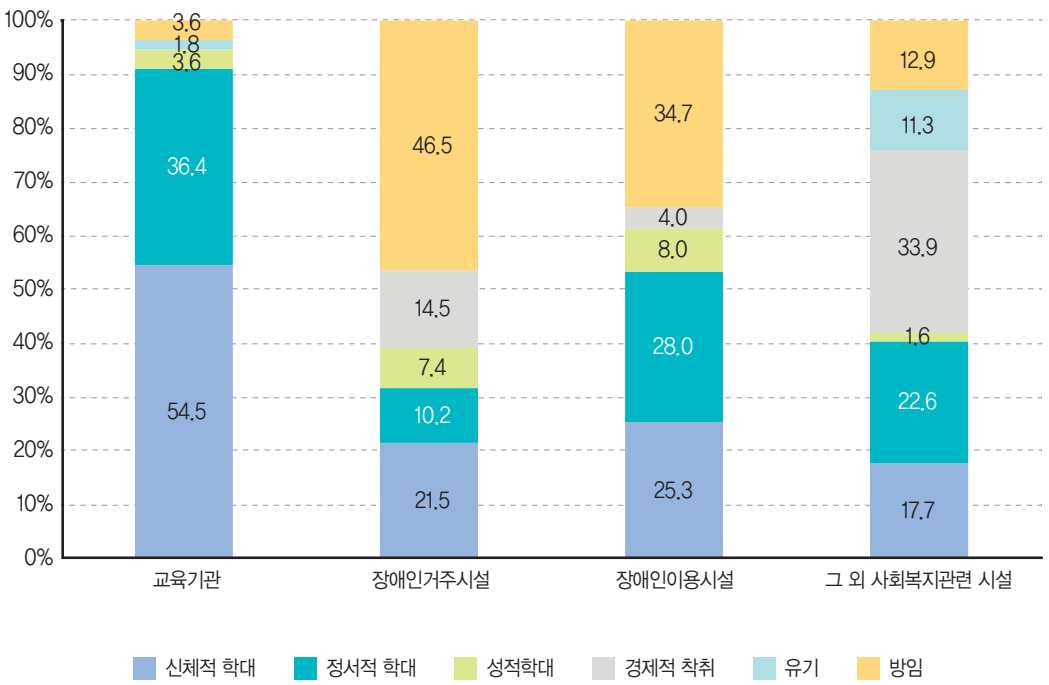
집단이용시설별로 세부 학대유형을 살펴보면 교육기관의 경우 신체적 학대가 54.5%(30건)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방임 46.5%(119건), 신체적 학대 21.5%(55건) 순으로 많았다. 또 장애인이용시설의 경우 방임 34.7%(26건), 정서적 학대 28.0%(21건) 순으로 많았고,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경우 경제적 착취가 33.9%(21건)로 가장 많았다.

[표 5-24]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II(중복 학대 미분류)

(단위: 건, %)

구분	교육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		계	
신체적 학대	30	54.5	55	21.5	19	25.3	11	17.7	115	25.7
정서적 학대	20	36.4	26	10.2	21	28.0	14	22.6	81	18.1
성적 학대	2	3.6	19	7.4	6	8.0	1	1.6	28	6.3
경제적 착취	–	–	37	14.5	3	4.0	21	33.9	61	13.6
유기	1	1.8	–	–	–	–	7	11.3	8	1.8
방임	2	3.6	119	46.5	26	34.7	8	12.9	155	34.6
계	55	100.0	256	100.0	75	100.0	62	100.0	448	100.0

[그림 5-8]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II(중복 학대 미분류)



마.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조치

1)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응급조치

집단이용시설의 장애인학대 총 313건 중에서 응급조치를 한 경우는 8.0%(25건)이었다. 쉼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장애인거주시설(6건), 의료기관(5건)으로 나타났다.

[표 5-25]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응급조치

(단위: 건, %)

구분	교육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		계	
쉼터	–	–	3	16.7	–	–	7	100.0	10	40.0
거주시설	–	–	6	33.3	–	–	–	–	6	24.0
의료기관	–	–	5	27.8	–	–	–	–	5	20.0
기타	–	–	4	22.2	–	–	–	–	4	16.0
계	–	–	18	100.0	–	–	7	100.0	25	100.0

2)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피해장애인 사법지원

집단이용시설의 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에게 지원한 사법지원은 고발 및 수사의뢰가 51.3%(81건)로 가장 많았으며,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44.9%(71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학대와 비교하면 고발 및 수사의뢰는 11.3%p,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은 2.5%p 많았다.

[표 5-26]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사법지원

(단위: 건, %)

구분	교육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		계	
고발 및 수사의뢰	2	22.2	41	56.2	30	50.8	8	47.1	81	51.3
후견인 선임	–	–	2	2.7	–	–	–	–	2	1.3
법률상담 및 절차 지원	5	55.6	29	39.7	29	49.2	8	47.1	71	44.9
소송구조	1	11.1	–	–	–	–	1	5.9	2	1.3
기타	1	11.1	1	1.4	–	–	–	–	2	1.3
계	9	100.0	73	100.0	59	100.0	17	100.0	158	100.0

*중복지원포함

3.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사례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신고

2018년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1,835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43.7%(802건)이었으며,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56.3%(1,033건)로 나타났다.

1)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사례판정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간의 사례판정 결과를 보면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례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45.0%였으며, 비신고의무자의 경우는 51.1%로 나타났다.

[표 5-27]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사례판정

(단위: 건, %)

구분	학대사례		비학대사례				계	
			잠재위험		비학대			
신고의무자	361	45.0	76	9.5	365	45.5	802	100.0
비신고의무자	528	51.1	74	7.2	431	41.7	1,033	100.0
계	889	48.4	150	8.2	796	43.4	1,835	100.0

2)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정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정 결과를 보면 신고의무자 가운데 가장 많은 신고를 한 직종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신고 사례 중 학대로 판정된 비율은 34.9%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은 신고를 한 직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이들이 신고한 사례 중 학대로 판정된 비율은 58.5%로 나타났다.

[표 5-28]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정

(단위: 건, %)

구분	학대사례		비학대사례				계	
			잠재위험		비학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47	34.9	35	8.3	239	56.8	421	100.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48	58.5	24	9.5	81	32.0	253	100.0
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22	55.0	5	12.5	13	32.5	40	100.0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	–	2	50.0	2	50.0	4	100.0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4	57.1	1	14.3	2	28.6	7	100.0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3	75.0	–	–	1	25.0	4	100.0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	–	1	100.0	–	–	1	100.0
초 · 중 · 고 교직원	18	54.5	3	9.1	12	36.4	33	100.0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10	52.6	1	5.3	8	42.1	19	100.0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	–	–	–	1	100.0	1	100.0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5	41.7	3	25.0	4	33.3	12	100.0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1	100.0	–	–	–	–	1	100.0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1	50.0	1	50.0	–	–	2	100.0
장기요양요원	2	50.0	–	–	2	50.0	4	100.0
계	361	45.0	76	9.5	365	45.5	802	100.0

나.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를 보면 신고의무자는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36.8%)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견하여 신고하였으며, 비신고의무자는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43.2%)를 더 많이 발견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례에서는 학대행위자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모,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지인 순으로 나타났다.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례에서는 학대행위자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모, 지인, 고용주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모두 학대행위자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나 부모일 때 가장 많은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29]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단위: 건, %)

구분		신고의무자		비고신고의무자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19	5.3	33	6.3
	부모	55	15.2	60	11.4
	조부모	7	1.9	–	–
	자녀	7	1.9	6	1.1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29	8.0	24	4.5
	그 외 친척	16	4.4	15	2.8
	소계	133	36.8	138	26.1
타인	동거인	13	3.6	13	2.5
	이웃	19	5.3	26	4.9
	지인	37	10.2	56	10.6
	고용주	18	5.0	40	7.6
	모르는사람	16	4.4	26	4.9
	소계	103	28.5	161	30.5
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4	1.1	27	5.1
	의료기관	–	–	5	0.9
	장애인거주시설	62	17.2	143	27.1
	장애인이용시설	42	11.6	32	6.1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	13	3.6	21	4.0
	소계	121	33.5	228	43.2
기타		4	1.1	1	0.2
계		361	100.0	528	100.0

다.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장애인학대 유형

1)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장애인학대 유형(중복 학대 미분류)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 중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 유형을 보면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경우 신체적 학대가 26.4%(136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착취 26.2%(135건), 정서적 학대 18.4%(95건), 방임, 성적 학대, 유기 순으로 나타났다. 비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학대의 경우 신체적 학대 28.3%(203건), 경제적 착취 23.3%(167건), 방임 20.1%(144건),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는 정서적 학대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에서 비신고의무자에 비해 높은 학대 발견율을 보였다. 반면 비신고의무자는 신체적 학대, 방임에서 신고의무자보다 높은 학대 발견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0]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장애인학대 유형(중복 학대 미분류)

(단위: 건,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신고의무자	136	26.4	95	18.4	48	9.3	135	26.2	17	3.3	85	16.5	516	100.0
비신고의무자	203	28.3	126	17.5	63	8.8	167	23.3	15	2.1	144	20.1	718	100.0
계	339	27.5	221	17.9	111	9.0	302	24.5	32	2.6	229	18.6	1,234	100.0

2)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장애인학대 유형(중복 학대 미분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라 중복 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장애인학대 유형별 신고자 유형을 보면 신체적 학대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가장 많았다. 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많았고,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의한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유형별 발견율은 신체적 학대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초 · 중 · 고 교직원 순이었으며, 정서적 학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초 · 중 · 고 교직원 순이었다. 성적 학대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순이었으며, 경제적 착취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순이고, 유기와 방임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고의무자 유형별로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신고에 의한 학대사례 발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초 · 중 · 고 교직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1]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장애인학대 유형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53	39.0	29	30.5	19	39.6	71	52.6	5	29.4	32	37.6	209	40.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3	39.0	45	47.4	14	29.2	48	35.6	9	52.9	42	49.4	211	40.9
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7	5.1	4	4.2	3	6.3	11	8.1	1	5.9	6	7.1	32	6.2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1.5	–	–	–	–	–	–	1	5.9	2	2.4	5	1.0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	–	1	1.1	–	–	1	0.7	–	–	1	1.2	3	0.6
초 · 중 · 고 교직원	12	8.8	10	10.5	3	6.3	1	0.7	–	–	–	–	26	5.0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3	2.2	3	3.2	6	12.5	1	0.7	–	–	–	–	13	2.5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4	2.9	1	1.1	2	4.2	2	1.5	1	5.9	1	1.2	11	2.1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1	0.7	1	1.1	–	–	–	–	–	–	–	–	2	0.4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	–	–	–	–	–	–	–	–	–	1	1.2	1	0.2
장기요양요원	1	0.7	1	1.1	1	2.1	–	–	–	–	–	–	3	0.6
계	136	100.0	95	100.0	48	100.0	135	100.0	17	100.0	85	100.0	516	100.0



보건복지부
www.mohw.go.kr

6

정책 제언

제6장

정책 제언

장애인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①예방 및 조기발견, ②피해자 지원, ③재발 방지의 세 가지 측면 모두를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인식 개선과 홍보 강화, 신고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특히 조사, 응급조치 등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예산 및 인력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장애인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뿐 아니라 재발 방지 프로그램의 마련 등 다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1. 대국민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

장애인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장애인학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민감도를 높이는 인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 인식 개선의 내용에 장애인학대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사업 역시 국가나 지자체의 의무로 포함시킬 경우 대국민 인식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학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알리는 홍보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를 알리기 위해 포스터나 리플릿 제작 · 배포, 홍보 영상 제작 · 배포, 홈페이지나 SNS 활용 등 다양한 홍보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국민 인식 개선을 이끌기에는 부족한 만큼, 홍보에 투여되는 예산과 홍보 횟수, 콘텐츠의 양이 전반적으로 늘어날 필요가 있다.

또한 홍보 방식의 다변화도 필요하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홍보 방법은 비용 부담이 적고 상대적으로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온라인 홍보 방식이다. 그러나 2018년 장애인학대 행위자 중 절반 이상이 50대와 60대라는 점에서 전체 성인 인구의 장애인학대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TV 공익광고와 같은 보다 대중적 방식,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 밀착형 홍보가 포함되도록 홍보 방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2. 다양한 신고 활성화 대책 강구

대국민 인식 개선과 더불어 피해장애인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18년 학대의심사례 중 43.7%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례인 만큼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는 직종을 제외한 나머지 직종에서는 장애인학대나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신고의무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의 실시, 교육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는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에서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특별한 자격 취득이나 보수교육이 없는 직군의 경우 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고 교육 결과에 대한 보고 의무도 없다.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지자체별로 신고를 통해 장애인학대가 밝혀진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공무원인 경우 자체 포상을 하는 등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신고 포상제가 도입될 경우 지역 주민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고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장애인학대 이해, 신고절차 안내 자료, 수어와 자막이 포함된 장애인학대 교육 영상을 제작 · 배포하였다. 2018년 현재 10.6%에 불과한 피해장애인 본인의 신고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당사자 교육, 캠페인, 자료 개발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적극적 초동조치 기반 확충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적으로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지원하는 전체 과정이 모두 중요하기는 하지만, 특히 초동조치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피해자지원이나 행위자에 대한 처벌 등 이후의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예산 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조사를 실시할 때 지자체에서 동행하여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조사 거부에 대해 단호한 처분을 내린다면 조사가 한층 효과적이며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CCTV 열람 권한의 신설, 자료 제공 요청 거부에 대한 벌칙 신설 등 조사 권한의 강화도 요구된다.

응급조치 역시 마찬가지이다. 2019년 하반기에 학대피해 장애인을 위한 쉼터 5개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지만 전국 13개의 쉼터로는 여전히 안정적인 응급조치를 실시하기에 역부족이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성폭력 · 가정폭력 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입소하기 어려운 상황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선 전국 17개 지자체에 최소한 개의 쉼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지역별 수요, 성별, 연령, 기능 등을 고려한 쉼터의 추가 설치를 고민해야 한다.

학대피해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긴급한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예산으로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응급입소나 입원 절차에서 피해장애인의 실질적인 보호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상자의 정신과 응급입원에 필요한 치료비를 산정 · 지원하는 것처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예산 산정 시에도 응급조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산하여 배정할 필요가 있다.

4.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예산 및 인력 확충

2018년 현재 전국의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17개가 설치 ·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각 기관별 인력은 기관장과 업무 지원 인력, 상담원 2인으로 총 4인 수준이다. 현행 인력 수준으로는 학대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과중한 업무 부담과 직원들의 소진, 이직으로 이어져 업무 단절과 전문성 저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2019년 현재 전국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66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33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단기간에 기관의 숫자를 급격히 늘리기 어렵다하더라도 담당 지역의 넓이와 과중한 업무량 등을 감안한 최소한의 기관수 확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인력은 기관별로 상담원이 최소 4인 이상은 배치되어야 장기간의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피해자지원이나 사후 모니터링 업무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예산은 인력의 유지, 기관 운영 외에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지역별 홍보, 적극적 피해자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한 필요한 연구나 프로그램 개발, 대국민 홍보, 교육 등을 진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산과 인력 확충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5.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 지원 대책 강화

피해자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가 51.7%,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가 2.8%로 절반 이상이 경제적으로 자립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경제적 자립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활하던 시설에서 학대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거주시설로 옮기게 되는 경우가 많고, 재가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들도 가족이 없고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가 장기간 노동력 착취를 당한 무연고 장애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시설–자립지원, 커뮤니티케어 정책과 상충된다. 뿐만 아니라 학대 피해자 중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이 27.6%에 이르고, 장애인거주시설에 발생한 학대의 비율이 전체의 21.9%에 달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지점이 아닐 수 없다.

학대 피해자들은 유사한 패턴의 학대에 다시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시설 문제가 터질 때마다 발표된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설 내 학대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은 가장 효과적인 학대 예방 대책이 될 수 있다. 즉, 피해장애인을 위한 주거서비스와 자립정착금 지원,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특례 적용 등 자립 지원 대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지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양한 복지자원의 연계를 통해 고립을 막고, 가족, 이웃 등 피해장애인을 둘러싼 주변의 인적 환경을 튼튼히 할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가족의 해체나 지역 내 정착 실패, 재학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6. 촘촘하고 강화된 처벌을 위한 법령 · 기준 정비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대표적인 장애인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력 착취와 관련된 조문은 구성요건이 까다로워서 실제 적용되기가 쉽지 않으며 횡령, 배임, 강요, 준사기, 명의도용(사문서 위조 등) 등 장애인에게 빈발하는 범죄는 금지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 재산범죄에서의 친족상도례나 친고죄 규정도 재고되어야 한다. 학대치사 등 장애인학대로 인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대부분 가까운 거리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생명 · 신체의 안전을 돌본다는 점에서 학대행위를 한 경우 특히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 신고의무자의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또는 특례법 제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법령을 정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 위반의 장애인복지법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법 금지행위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은 벌칙(제86조)이 시행된 2015년 12월 이후이므로 아직까지 처벌 사례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별로 형량의 차이가 너무 크거나 처벌이 미비하다는 논란이 많다. 다양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법위반범죄에 대해서도 양형위원회에서 적절한 양형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7. 다각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처벌의 강화 외에도 다양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 장애인학대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취업제한 규정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모두 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 · 노인복지시설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격상실, 자격정지 등의 자격형 도입, 취업 제한 등 보다 다양한 제재수단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행위자의 태도나 성향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나 성범죄처럼 형벌 외에 행위자에게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거나 사회봉사, 장애인학대예방에 적합한 별도의 교육 수강 등을 강제하는 방법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학대 방지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행위자를 위한 교육이나 상담,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가난이나 질병, 돌봄 부담에서 오는 소진, 정신건강상의 문제 등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학대가 발생하거나 재발하는 경우 적절한 지원 대책이나 정책 마련 역시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부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개 및 현황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권리옹호 목적으로 2017. 1. 1.부터 설치 · 운영되는 법적기관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 · 보호 · 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에 둔다.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연구, 프로그램 개발, 지역기관 지원 등을 담당,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개별 학대사건에 대한 지원을 실시

구분	주요 업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능력개발 • 관계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정책의 개발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제공 • 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국제 교류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 · 운영 • 피해장애인 보호 및 피해회복 • 관계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황(2019. 9. 1. 기준, 19개)

기관명	전화	주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02-6951-1790	(우 08513)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44, 1205호 (가산동)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02-3453-9527	(우 0627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16,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2층 (대치동)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1-715-8295	(우 47511)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6번길 10, 금복빌딩 6층 (거제동)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3-716-8295	(우 41242)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2길 2, 서한코보스카운티 403호 (신천동)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2-425-0900	(우 22134)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69, 르네상스빌딩 18층 (주안동)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062-716-1633	(우 6196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19, 나라빌딩 2층 (치평동)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	042-631-5667	(우 34541)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99, 루루빌딩 3층 (용전동)
울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2-260-8295	(우 44669)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311, 연세H타워 2층 (신정동)
세종장애인권익옹호기관	044-905-8295	(우 30150)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43, 금강시티타워 604호 (보람동)
경기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1-287-1134	(우 1663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 208호 (오목천동)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1-851-1007	(우 11813)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25번길 140, 성산타워 301호 (민락동)
강원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3-264-8296	(우 24390)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 199, 경림빌딩 2층 (석사동)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043-287-8295	(우 28797)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1063번길 61-54, 라데팡스타워 303호 (분평동)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041-551-8295	(우 31106)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상가2길9, 팰리스피아 110호 (두정동)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063-227-8295	(우 5496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석산2길 17-9, 4층 (효자동3가)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061-285-8298	(우 58615)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633, 세븐에이치타워 2층(석현동)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4-282-8295	(우 3766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4-5 (대잠동)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5-603-8295	(우 5151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85, 리제스타워 210호 (중앙동)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064-900-9695	(우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귤로5길 21, 1층 (이도이동)


보건복지부
www.mohw.go.kr

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인 쇄 일: 2019년 9월

발 행 일: 2019년 9월

발 행 인: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편 집 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은종군

편집위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김정혜, 김현정, 이미현, 이정민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8)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02-6951-1790)

인 쇄: 블루애드(02-6082-7076)

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